2025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Hyundai Card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3 월 6 일
현대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창 현

목차 Contents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1. 지배구조 일반 3
2. 이사회 6
3. 사외이사회 28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2
5.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55
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98
7. 감사위원회 104
8. 위험관리위원회 113
9. 보수위원회 121
10. 집행위원회 122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28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29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30

1. 보수위원회 131
2. 보수체계 136

제3절 관련 규정 142

1. 정 관 143
2. 지배구조내부규범 166
3. 이사회규정 178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184
5. 감사위원회규정 188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194
7. 보수위원회규정 199
8. 집행위원회규정 204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각각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인 재무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회사의 재무 · 내부통제 · 위험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어느 경영진 1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5년 말 현재 이사회의 55.6%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 대표이사 · 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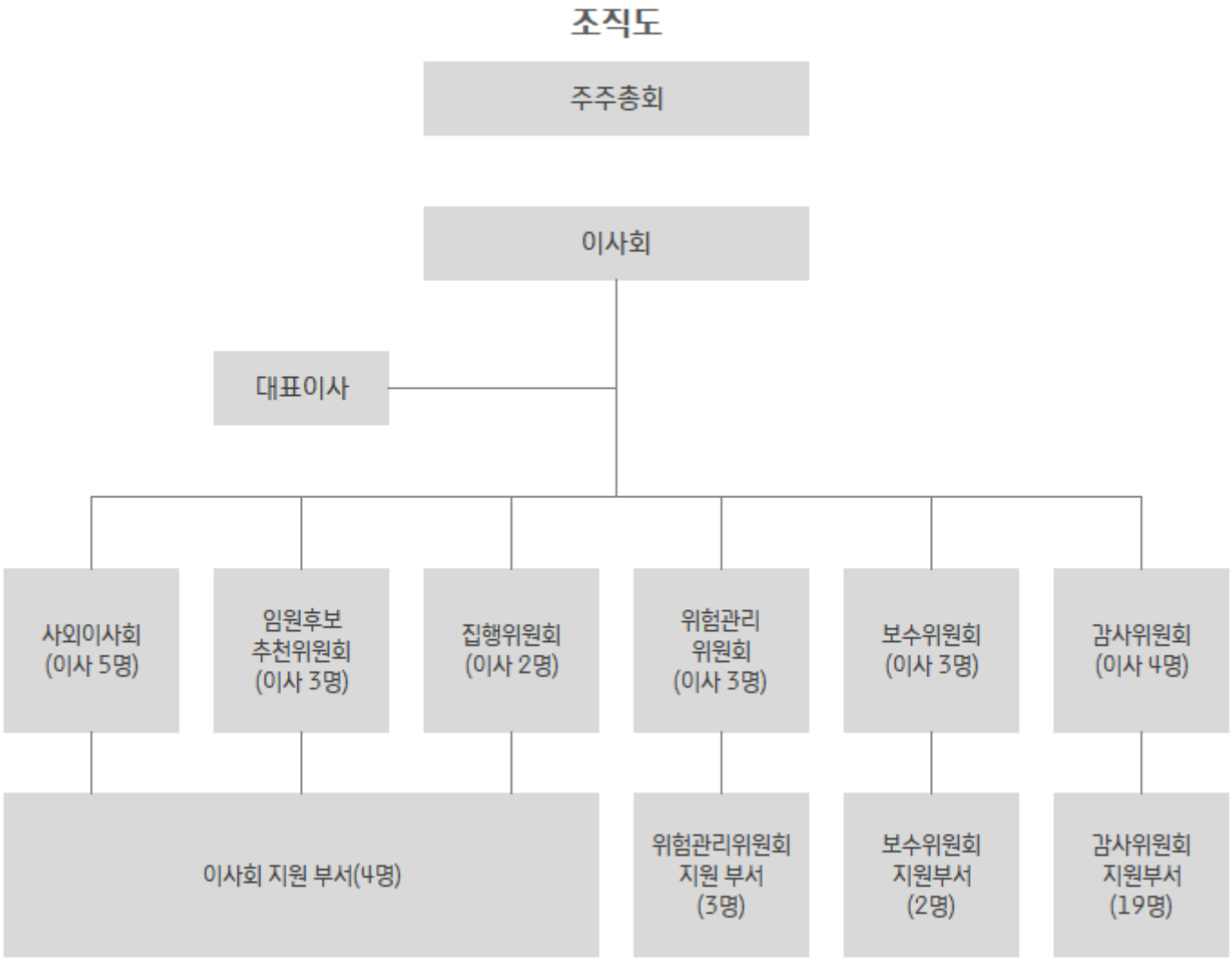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금융 · 경제 · 경영 · 리스크 ·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 · 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처리 기준 ·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되는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업무처리상황 및 정관·이사회규정 등 회사의 주요사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차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등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회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경영공시」 및 여신금융협회 공시게시판 내 「경영·지배구조공시」⇒「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회사 홈페이지 주소: hyundaicard.com/about, 여신금융협회 공시게시판: gongsi.crefia.or.kr).

회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5.12.31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5명 · 55.6%로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외이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로서,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이고 폭넓은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사회의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총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외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주요안건을 검토하고, 사외이사들이 회사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관리 업무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가개선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사외이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 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손실허용한도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사외이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 위원회는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특정 임직원의 보수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사외이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집행위원회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등을 검토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로서, 회사의 중요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이고 폭넓은 검토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성명/상임 · 사외 · 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	5/9	정태영 / 상임	정관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이사회규정 제1장~제2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장~제7장
사외이사회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된 논의기구	5/5	변광윤 / 사외	정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이사회규정 제3장~제4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3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3/3	서병호 / 사외	정관 제41조, 제42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4조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4/4	조성표 / 사외	정관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감사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5조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	2/3	조성표 / 사외	정관 제41조, 제42조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6조
보수위원회	보수체계관리	2/3	변광윤 / 사외	정관 제41조, 제42조 보수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7조
집행위원회	회사주요사항 의결	1/2	-	정관 제41조, 제42조 집행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제28조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 8. 집행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

(1) 총괄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 · 절차 ·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 수립 ·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수립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3호 제가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① 회원 성장 지속, ② 수익성 중심 자산확대의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고, 2024년 12월경에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2025년 사업운영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는 2024년 12월 9일 개최된 사업운영계획 설명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사업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개별 보고를 통해 사업운영계획 초안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사업운영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2025년 사업계획 최종안은 2024년 12월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이하 '2024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분기(2025년 9월 9일) 사외이사들에게 2025년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이하 '2025년 4분기 정기이사회')는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승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경영목표는 2025년 11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 15일 개최된 설명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사업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개별 보고를 통해 사업운영계획 초안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사업운영계획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2026년 사업계획 최종안은 2025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경영계획 전략에 대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회사의 운영방향은 ① 수익성 효율 관리 중심으로 내실 강화, ② 신사업의 손익기여도 확대 지속이며, 이를 위해 ① 모집채널별 체질개선 ② Data Science 활용 확대로 효율성 추구, ③ 상품간 균형 있는 성장으로 금융자산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수립하여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6년 3분기에 사외이사들에게 2026년 사업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나) 정관 개정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2호 제마목).

이에 따라 2025년 3월 4일 개최된 1분기 임시이사회에서 투자에 관한 승인기구 및 승인 기준 변경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후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주요 변경내용		개정 이유
		개정 전	개정 후	
1분기 임시이사회 ('25.3.4)	제37조 (이사회의 결의)	200억 이상의 대체투자 또는 신규 진출 국가에 대한 투자는 이사회 의결 필요	(삭제) 유사규정과 합병	중복규정조항 개선 및 투자금융 활성화

1분기 임시이사회 ('25.3.4)	제37조 (이사회의 결의)	단일한 협의 또는 거래가 200억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필요	(단서추가) 정관 별첨에 규정한 대체투자 중 200억 초과 400억 이하 거래는 위험관리위원회, 400억 초과 거래는 이사회 승인 필요	중복규정조항 개선 및 투자금융 활성화

또한, 2024년 8월 22일 개최된 3분기 임시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후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항목	주요 변경내용		개정 이유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3분기 임시이사회 ('24.8.22)	제37조 (이사회의 결의)	-	(신설)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반영
	제48조 (주주권익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등 설치	(삭제) 특별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삭제	
	제60조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신설) - 감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감사위원회의 점검 · 평가 개선 조치등에 관한 사항	
	제61조 기타	제60조 기타	제61조 기타 - 기존과 동일, 조항번호만 변경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이사회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면서 동시에 예산계획(임직원 보수가 반영된 OPEX 포함)을 승인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3호 제가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구체적인 예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예산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계획은 2024년 12월경에 카드경영관리실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4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OPEX 12,371억원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예산계획은 2025년 12월경에 카드경영관리실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OPEX 13,170억원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결산승인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정관 제37조 제3항 제1호 제나목). 또한, 이사회는 구체적인 결산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결산안에 대해 승인합니다. 주주총회는 결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는 2025년 1월경에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초안을 마련한 후,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했으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025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분	연결	별도
당기순이익	3,164억원	3,087억원
총자산	27조 3,897억원	27조 1523억원
총부채	23조 2,961억원	23조 307억원

(라)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 해산, 청산, 기타 회사의 법적 형태의 변경 및 200억원 이상의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 ·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1호 제다목 및 제라목, 제3호 제나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2025년에는 회사의 합병, 해산, 청산 기타 회사의 법적 형태의 변경이나 영업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아 이사회가 승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 · 평가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37 조 제 3 항 제 5 호 제나목).

회사는 2025년 9월 9일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변경내용	목적
3분기 정기이사회 ('25.9.9)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	내부통제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내부통제 운영안 - 내부통제 단기/중장기 추진전략 - 내부통제 점검기준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 세부정책의 수립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목적
3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25.9.9)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 금융복합기업진단 수준에서 위험 관리를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명문화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일관된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마련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회사의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이나 변경은, 정관 및 관련 사규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6호,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이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 및 이사회규정, 집행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관 제37조 제3항 제2호 제마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정관 제37조 제3항 제2호 제마목).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개정은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관 제41조 제1항,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2025년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정이 발생하지 않아 이사회가 승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영승계 개시사유	- 임기의 만료(연임의 경우 제외) - 사직 -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의 발생 - 해임 - 비상상황의 발생
최고경영자 해임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
비상상황 발생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영승계절차 진행

구분	내용
경영승계 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립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경영승계 계획 변경 가능
최고경영자 선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임 단, 이미 이사로 선임된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 1호의 절차 생략 1.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2.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 선임절차는 경영승계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완료

또한,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부재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비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에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및 후보군 선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승인 결과는 2025년 3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이사회는 대주주 · 임원 등과의 거래가 회사와 이익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 임원 또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 시 이를 심의 · 의결합니다(상법 제398조, 정관 제37조 제3항 제7호 가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회사는 2024년 12월 11일 개최된 2024년 4분기 정기이사회(이하 '2024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거래계획에 대한 이사회 포괄승인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개별 건들 발생시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이를 심의·의결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정관 제37조 제3항 제7호 나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회사는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출자시 이를 심의 · 의결합니다(여전법 제49조의2, 제50조, 정관 제37조 제3항 제7호 다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회사는 2024년 12월 11일 개최된 2024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2025년 기업구매전용카드 한도 부여와 관련된 신용공여를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수시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를 심의·의결 합니다(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정관 제37조 제3항 제7호 라목, 이사회규정 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회사는 계열회사 등과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68조 제3항, 정관 제37조 제2항).

위와 같은 승인사항의 발생여부는 실무부서인 법무팀의 법률질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며, 위와 같은 승인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거래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전 법률 및 Compliance 검토, 금융그룹리스크 관련 부서의 내부거래 적성성 검토를 통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의 수정 등을 요청합니다.

(아)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활동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연 2회 이상 회사의 실적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업무 현황 등을 보고받음으로써,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활동을 수행합니다.

2025년 2월 6일 개최된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안건을 통해 '24년 연간 실적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연태훈 사외이사는 연결재무제표 상의 기타수익 항목의 구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조성표 사외이사는 24년 손익 중 기타수익 증가 요인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에 진행된 사외이사 세션에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25년 예상실적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이사회의 총 원수는 4명 이상 1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정관 제29조 제1항).

최소원수를 4명으로 규정한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시 구성원수가 4명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대원수를 12명으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2명 이상인 경우 이사간 의견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이사회는 모두 9명의 이사(대표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태훈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 서병호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김덕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으며, 2025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조창현 전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날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3년이고, 사외이사의 경우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2년 (선임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연임 사외이사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사는 모두 연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일 수 없습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당사가 이사의 임기를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극적 자격요건 및 정관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구분	내용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
사외이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

2025년 말 현재 이사회의 의장은 경영분야 전문가인 정태영 대표이사가 수행 중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이사의 중점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경영분야 4명, 재무분야 2명, 금융분야 2명, 회계분야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말 Board Skills Matrix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 역량구성표 (Board Skills matrix)

('25.12.31 기준)

구분	정태영 (대표이사)	조창현 (대표이사)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경영	●	●	●	●	●	●		●	●
금융	●	●					●	●	●
재무	●		●	●					
회계						●			
경제							●		
디지털	●				●		●		●
법무									
미래산업	●								
소비자보호							●		

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임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6조 제1항). 이사회 의장으로는 정태영 대표이사(2003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이하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에서 변광윤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들이 경영진과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 및 회사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 의장 정태영

정태영 이사회 의장은 2003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임하고 있으며, 정태영 의장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임기는 2027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정태영 의장은 2025년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정태영 의장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15	현재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대표이사/부회장
2015	2021.09	현대캐피탈 대표이사/부회장
2007	2015	현대커머셜 대표이사/사장
2003	2015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대표이사/사장
2003	2003	현대카드 부사장
2001	2002	기아자동차 전무, 구매본부장
2000	2000	현대모비스 전무, 기획재정본부장
1996	1999	현대정공 상무, 미주 및 멕시코 법인장
1991	1995	현대정공 이사, San Francisco지사장
1988	1990	현대정공 이사, 동경지사장
1987	1988	현대종합상사 이사, 기획실장

② 사외이사 변광윤 (선임사외이사)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2025년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선임 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2	현재	뉴웨이브커머스 대표
2013	2021	이베이코리아 대표

③ 사내이사 조창현

조창현 사내이사는 2025년 7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 후, 같은 날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내이사/대표이사 임기는 2028년 7월 만료됩니다. 조창현 사내이사/대표이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사내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5.07	현재	현대카드 대표이사/부사장
2024.04	2025.07	현대카드 카드영업본부장 전무
2023.10	2024.04	현대카드 GPCC본부장 상무
2021.11	2023.10	현대카드 PLCC본부장 상무
2021.01	2021.11	현대카드 금융/법인사업본부장 상무
2019.06	2021.01	현대캐피탈 금융본부장 상무
2018.11	2019.06	현대카드 금융영업실장 이사
2017.06	2018.11	ST Unitas 오프라인전략그룹/CVO
2016.01	2017.05	현대카드 CLM실장 이사

④ 기타비상무이사 이승조

이승조 기타비상무이사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이승조 기타비상무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3.11	현재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전무
2023.09	2023.10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상무
2021	2023.08	현대자동차 그룹감사실 감사2팀장/상무
2019	2020	현대자동차 재무관리실장/상무
2018	2018	현대자동차 경영관리실장/상무

⑤ 기타비상무이사 김승준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는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8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4.11	현재	기아 재경본부장/전무
2024	2024	기아타이거즈 감사
2023	2024	기아 재경본부 경영관리실장
2021	2022	기아 재경본부 재무관리실장
2020	2020	기아 재경본부 경영분석팀장

⑥ 사외이사 조성표

조성표 사외이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동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고.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5.03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2024.01	현재	아이에스티아이 미래전략연구소(RISTI) 고문
2023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1986	2023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8	2019	한국회계학회 회장
2012	2021	대성홀딩스 감사위원장

⑦ 사외이사 서병호

서병호 사외이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동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3.02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
2006.07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20.03	현재	㈜우진 사외이사
2024	현재	금융위원회 AI협의회 실무단 위원
2023	현재	하나은행 경영자문위원
2024	2024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TF 위원

⑧ 사외이사 더글라스차이**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동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고, 임기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17.12	현재	Dun Fu Industrial Corporation Limited Director
2018.02	현재	Giver Concept Limited Director
2021.01	현재	Star Ilya Limited Director
2022.01	현재	Fubon Insurance Co., Ltd. Director
2022.11	현재	Fubon Direct Marketing Consulting Co., Ltd. Supervisor
2023.06	현재	Fubon Securities Co., Ltd. Director
2023.07	현재	Fubon Insurance Agency Co., Ltd. Director
2023.07	현재	momo.com Inc. Director
2023.08	현재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Head of FinTech Division
2023.11	현재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Co., Ltd.

		Deputy Head of Digital Banking Division
2023.12	현재	Fubon Bank (Hong Kong) Ltd. Non-executive Director
2023.12	현재	Epoch Foundation Director
2024.03	현재	Chairman, Chung Fu Co., Ltd.
2024.06	현재	Director, Monte Jad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Taiwan).
2022.08	2024.12	Shenzhen Tengfubo Investment Co., Ltd. Vice Chairman
2023.06	2024.09	Fubon Sports & Entertainment Co., Ltd. Chairman
2021.11	2023.08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Deputy Division Head, Fintech Division
2021.07	2023.06	Avery Version Limited Director
2020.07	2021.11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Management Associate, Corporate Development Division
2019.06	2019.08	WeSure Product Manager, Innovative Product Team

*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대만국적자로 여권상 등록된 정식이름은 'Cheng-Tao (Douglas) Tsai '임

⑨ 사외이사 린치펑*

린치펑 사외이사는 2022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 후 재선임 되었고, 임기는 2026년 3월에 만료됩니다.

린치펑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5.03	현재	Taiwan Consulting Group Vice Chairman
2022.06	현재	Fubon Multimedia Technology Senior Advisor
2012	2024.06	Fubon Gehua (Beijing) Enterprise Chairman
2018	2022.06	Fubon Multimedia Technology Chairman

* 린치펑 사외이사는 대만국적자로 여권상 등록된 정식이름은 'Lin, Chi-Feng '임

※ 2025년 퇴임 이사

① 사내이사 김덕환*

김덕환 사내이사는 2018년 11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최초 선임 후,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고, 4월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2년 9월 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고, 3월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사내이사/대표이사 임기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2025년 7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김덕환 사내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23.03	2025.07	현대카드 대표이사/부사장
2021.04	2022.09	현대카드 대표이사/부사장
2017	2021	현대카드 카드마케팅부본부장~카드부문대표
2011	2017	현대캐피탈 금융기획실장~캐피탈2부본부 부본부장
2007	2011	삼성카드 부장
2005	2007	GE capital Marketing Leader

2004	2005	Royal Bank of Scotland
1995	2004	Chase Manhattan Bank

* 김덕환 사내이사는 미국국적자로 여권상 등록된 정식이름은 김 데이비드 덕환(Kim, David Deokhwan)임

② 사외이사 연태훈 (선임사외이사)

연태훈 사외이사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2022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2024년 1분기 2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선임 되었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의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10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	2024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외이사
2016	2018	Sh수협은행 사외이사
2015	2016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2013	2015	금융위원회 자문관
2002	2010	KDI 연구위원
2000	2002	PWC Consulting 컨설턴트
1999	2000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3) 요약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정태영	상임	이사회 의장	-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 기아자동차 구매본부장	'03.03.27 ('24.03.29 연임)	'27.03	22년 9개월	-
변광윤	사외	선임사외이사 보수위 위원장 임추위 위원 감사위 위원	- 뉴웨이브커머스 대표	'22.03.31 ('24.03.27 연임)	'26.03	3년 9개월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연태훈	사외	선임사외이사 보수위 위원장 임추위 위원장 감사위 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외이사	'21.03.24 ('23.03.29 연임)	'25.03 (퇴임)	4년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조창현	상임	보수위 위원 위험관리위 위원 집행위 위원	-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사장 - 현대카드 카드영업본부장	'25.07.30	'28.07	5개월	보수위 위험관리위 집행위
김덕환	상임	보수위 위원 위험관리위 위원 집행위 위원	-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사장 - 현대캐피탈 금융본부장	'18.11.27 ('23.03.29 재선임)	'25.07 (사임)	6년 1개월	보수위 위험관리위 집행위
이승조	비상임	-	-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 현대자동차 재경사업부장	'24.03.27	'27.03	1년 9개월	-

김승준	비상임	-	- 기아 재경본부장 - 기아 경영관리실장	'25.03.28	'28.03	9개월	-
조성표	사외	감사위 위원장 위험관리위 위원장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아이에스티아이 미래전략연구소(RISTI) 고문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석좌교수	'22.03.31 ('24.03.27 연임)	'26.03	3년 9개월	감사위 위험위
서병호	사외	보수위 위원 임추위 위원장 감사위 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5.03.28	'27.03	9개월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
더글라스차이	사외	감사위 위원 보수위 위원 임추위 위원 위험관리위 위원 집행위 위원	-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Head of FinTech Division - Fubon Insurance Co., Ltd. Director	'22.03.31 ('24.03.27 연임)	'26.03	3년 9개월	감사위 보수위 임추위 위험관리위 집행위
린치펑	사외	-	- Fubon Multimedia Technology Senior Advisor - Taiwan Consulting Group Vice Chairman	'22.07.27 ('24.03.27 연임)	'26.03	3년 5개월	-

* 감사위(감사위원회), 보수위(보수위원회),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위험관리위원회), 집행위(집행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2.8%(정기이사회의 경우 97.1%, 임시이사회 88.2%)입니다. 이처럼 90% 이상의 높은 참석률로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개최된 1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이하 '1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2월 6일 개최된 1분기 정기이사회(이하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4년 결산을 반영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계열회사와의 M포인트 마케팅계약, 계열회사와의 IT계약, 계열회사와의 공통비 정산계약, 계열회사와의 자기거래 및 규정 개정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3월 4일 개최된 1분기 제2차 임시이사회(이하 '1분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변경, 주주간 계약 및 정관의 개정,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계열회사와의 사옥관리계약,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계열회사와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및 은행 연장 약정 체결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이하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 겸직,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준법감시인 선임,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및 은행 신규 약정 체결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개최된 2분기 정기이사회(이하 '2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재무관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인, 대표이사 선임 계획, 임시주주총회 소집,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개정,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 및 계열회사와의 마케팅업무 위수탁계약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7월 30일 개최된 3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이하 '3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정기이사회(이하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계열회사와의 M할부 업무제휴 거래, 외화 자금 조달, 퇴직연금 납입 및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이하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계열회사와의 마케팅계약 체결, 계열회사와의 IT계약,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각 이사회 별 구체적인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5년도 1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 : 2025. 01. 14 (오전 10시 30분 ~ 오전 10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김덕환	이승조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1]	불참	찬성	불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

(나) 2025년도 1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2. 06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김덕환	이승조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1]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2]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M포인트 마케팅계약 승인[3]	불참	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4]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공통비정산 거래 승인[5]	불참	찬성	의결권제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자기거래 승인[6]	불참	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규정 개정 승인[7]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8]	이의 없음					
	2024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수행실적 보고[9]	이의 없음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10]	이의 없음					
	2024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보고[11]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12]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13]	이의 없음					
	2024년 임원 변동현황 보고[14]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5]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6]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7]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8]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9]	이의 없음					

*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3)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의 M포인트 업무제휴 거래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4) 현대오토에버와의 IT계약 체결 승인
5) 현대커머셜과의 공통비용 정산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6) 현대커머셜, 블루웰넷, 현대엘터너티브와의 공통비정산 계약 체결 및 현대엘터너티브와의 자기거래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7) 내부통제기준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8)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 결과 보고
9) 법령 준수여부 점검/통제활동 등 2024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수행실적 보고
10) 2024년 감사실시 현황 등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11) 2024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
12)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2024년 4분기 법규 및 감독기관 동향보고
13) 2024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14) 2024년 임원 변동 내역 보고
15)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가 승인한 사항 보고
16) 2025년 감사팀 업무계획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7) 2025년 리스크 사업계획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8)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하였음을 보고
19) 은행 약정 연장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다) 2025년도 1분기 제2차 임시이사회 : 2025. 03. 04 (오후 3시 ~ 오후 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김덕환	이승조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불참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1]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주간계약 및 정관 개정 승인[2]	불참	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일부찬성	일부찬성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3]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4]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5]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6]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7]	불참	찬성	의결권제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은행 연장 약정 승인[8]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9]	이의 없음					

*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커머셜,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Fubon Life Insurance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현대카드 정관 개정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3)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
4)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5)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
6)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
7) 현대캐피탈과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8) 은행 연장 약정 승인
9)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라) 2025년도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 : 2025. 03. 28 (오후 2시 ~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김덕환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일신상의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1)]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겸직 승인[2)]	불참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3)]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4)]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5)]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은행 신규 약정 승인[6)]	불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정태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변광윤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2)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기아 사내이사, 현대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4)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5)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6) 은행 신규 약정 승인

(마) 2025년도 2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6. 13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김덕환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4)]	일부찬성	찬성	일부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6]	의결권제한	찬성	의결권제한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7]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8]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1]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2]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3]	이의 없음					

*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2)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
3) 202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4) 현대커머셜 및 현대엘터너티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5) 현대엘터너티브에 대한 증자 승인
6) 현대커머셜과의 대출중개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7)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준비 등 2025년 1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8) 2025년 1분기 주요 소비자보호 활동 및 민원현황 보고
9) 감사보고서 제출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0) 20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 승인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1)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및 의결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2)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3)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바) 2025년도 3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 : 2025. 07. 30 (오후 4시 ~ 오후 4시 20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조창현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대표이사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7.22일임

[비고]
1) 조창현 대표이사 선임 승인
2)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사) 2025년도 3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9. 09 (오후 2시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조창현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계열회사와의 M할부 업무제휴 거래 승인[1]	찬성	찬성	의결권제한	의결권제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외화 자금 조달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직연금 납입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5]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6]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7]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1]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캐피탈과의 M할부 업무제휴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2) 외화 자금 조달 승인
3) 퇴직연금 납입 승인
4)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
5)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6) 2025년 2분기 주요 소비자보호 활동 및 민원현황 보고
7) 20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
8)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를 개정하였음을 보고
9)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보고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등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1)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아) 2025년도 4분기 정기이사회 : 2025. 12. 19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정태영	조창현	이승조	김승준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계약 체결 승인[2]	찬성	찬성	일부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5]	일부찬성	찬성	일부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승인[7]	일부찬성	찬성	일부찬성	일부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11]	이의 없음					
2025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12]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3]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4]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5]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6]	이의 없음					

*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방향성 및 영업계획·손익계획 등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와의 마케팅 계약 및 변경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3) 현대오토에버와의 IT 계약 승인
4) 현대얼터너티브가 설정하는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
5)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포괄한도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6)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
7)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한도 부여 관련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8)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
9) 자금세탁방지 업무치침 개정 승인
10)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11)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12) 정보보안 사규 개정 등 2025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13) 임직원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승인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보고
14)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5)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임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하였음을 보고
16)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라.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평가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평가

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및 그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단,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므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에 전년도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 및 평가합니다.

점검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평가 평균 점수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평가 점수를 위원회별 평가 비율 적용하여 종합평가 산출

- 평가항목: 상정안건의 적정성·중요성, 이사회 소집 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위원의 역할 등

각 사외이사 및 임원간의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2025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체	평가	평가의견
이사회	A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견제 및 균형의 측면에서 적정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논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상응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함 - 수시 및 정기 교육을 통하여 업계 및 관련 산업동향, 최신 트렌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이해도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회 및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충실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중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배경 설명과 회사의 장기 비전과의 연관성을 충실히 제시하여 사외이사와 경영진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회의체	평가	평가의견
감사위원회	A	-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감독하여 금융사고 등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사회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회계·재무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되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경과 등을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위험관리위원회	S	-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전략 및 기본 방침,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투자 및 손실 한도 등 위험관리 기준 제정 및 주요 위험 점검 관련 업무 수행내역을 검토·의결하여 선제적인 위험관리 가능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감독기관 규제사항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회사의 대응사항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보수위원회	A	- 이사 보수 한도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에 제안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인 및 회사 성과와 연동된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려 노력함 -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주주이익을 보호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	-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법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배구조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지원부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후보자를 모집, 조사, 심사하여 후보군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함
집행위원회	A	-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 받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함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대표이사(최고경영자)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 경영성과 및 리더십, 비전제시, 전문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절차는 내부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내이사

이사 평가는 매년 1회 진행되며, 연간 업적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식은 전략과제, 성과지표로 이루어지며, 각 과제별 달성도, 중요성, 공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종합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전략과제는 이행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달성여부로 평가한 후 각 과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자료를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평가합니다.

■ 기타비상무이사

회사는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1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에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점검 및 평가합니다.

점검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식: 사외이사 및 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 설문평가 실시 → 항목별 등급 사외이사 평가: 임원 평가 4:1 비율로 하여 산출 → 항목별 등급 평균하여 종합평가 등급 산출
- 평가항목: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
- 평가결과는 매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방식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사외이사 및 임원간의 평가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2025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	종합평가 결과					평가 의견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서병호	A	A	A	S	A	- 자본시장 및 금융경제 전문가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방향 예측 등 풍부한 전문지식을 통해 현실 감각 있는 이사회 논의에 기여함 - 승인 안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유지, 논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함
변광윤	A	S	A	A	A	- 다수 기업을 운영한 경험에서 축적한 경영 관련 지식과 노하우로 이사회 안건에 관한 현실감각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 - 법령 및 규제 환경 변화에 관한 한 발 앞선 의견 제시로 심층적인 사전 검토를 가능하게 함
조성표	S	A	S	A	S	-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학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안건들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전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이사회, 위원회 및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함

더글라스 차이	A	A	A	A	A	- 대만 금융지주의 임원으로서 글로벌 금융 경험을 보유하고, 금융그룹 간의 전략적 연계, 자본시장에 관한 이해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함 - 전략적 투자자가 선임한 사외이사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안정감 있는 균형을 유지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린치펑	A	A	A	A	A	- 대만 내 다양한 기업을 운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다양한 회사의 고문, 대표로서 경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이사회 안건의 균형감 있는 검토에 기여함 - 회사가 글로벌 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해외 시장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흐름의 변화를 인지하는데 기여함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6조). 또한, 사외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 정관 제29조 제4항).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제3항, 정관 제32조 제3항, 이사회규정 제12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 제6항).

이에 따라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개최된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이하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정태영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태영 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탁월한 리더십을 구비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제시 및 건전경영을 위한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회사를 안정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태영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현황 및 금융업 전반을 이해시키고, 각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 가능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회사는 1분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변광윤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오랜 기간 기업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며 경영에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역임하여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회사의 중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고 있기에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회

가. 역할

사외이사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관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며 대표이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회사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5년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사외이사회를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임기 시작과 함께 사외이사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사외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사외이사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됩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8회의 사외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결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회사의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차 사외이사회 : 2025. 01. 14 (오전 10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

(나) 2025년도 제2차 사외이사회 : 2025. 02. 06 (오후 1시 50분 ~ 오후 2시)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1]	안건 검토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2]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M포인트 마케팅계약 승인[3]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공통비정산 거래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자기거래 승인[6]	안건 검토 등
	규정 개정 승인[7]	안건 검토 등

[비고]
1)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3)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의 M포인트 업무제휴 거래 승인
4) 현대오토에버와의 IT계약 체결 승인
5) 현대커머셜과의 공통비용 정산 승인
6) 현대커머셜, 블루웰넷, 현대얼터너티브와의 공통비정산 계약 체결 및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자기거래 승인
7) 내부통제기준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다) 2025년도 제3차 사외이사회 : 2025. 03. 04 (오후 2시 55분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1]	안건 검토 등				
주주간계약 및 정관 개정 승인[2]	안건 검토 등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3]	안건 검토 등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6]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7]	안건 검토 등				
은행 연장 약정 승인[8]	안건 검토 등				

[비고]
1)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커머셜,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Fubon Life Insurance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현대카드 정관 개정 승인
3)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
4)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5)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
6)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
7) 현대캐피탈과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
8) 은행 연장 약정 승인

(라) 2025년도 제4차 사외이사회 : 2025. 03. 28 (오후 1시 40분 ~ 오후 2시)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이사 겸직 승인[2]	안건 검토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3]	안건 검토 등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4]	안건 검토 등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5]	안건 검토 등
은행 신규 약정 승인[6]	안건 검토 등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외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정태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변광윤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2)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기아 사내이사, 현대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승인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4)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5)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6) 은행 신규 약정 승인

(마) 2025년도 제5차 사외이사회 : 2025. 06. 10 (오후 15시 ~ 오후 15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2]	안건 검토 등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3]	안건 검토 등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6]	안건 검토 등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2)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
3) 202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4) 현대커머셜 및 현대얼터너티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
5) 현대얼터너티브에 대한 증자 승인
6) 현대커머셜과의 대출중개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

(바) 2025년도 제6차 사외이사회 : 2025. 07. 30 (오후 3시 50분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7. 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대표이사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2]	안건 검토 등				

[비고]
1) 조창현 대표이사 선임 승인
2)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사) 2025년도 제7차 사외이사회 : 2025. 09. 09 (오후 1시 40분 ~ 오후 1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계열회사와의 M할부 업무제휴 거래 승인[1)]	안건 검토 등				
외화 자금 조달 승인[2)]	안건 검토 등				
퇴직연금 납입 승인[3)]	안건 검토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4)]	안건 검토 등				

[비고]
1) 현대캐피탈과의 M할부 업무제휴 승인
2) 외화 자금 조달 승인
3) 퇴직연금 납입 승인
4)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

(아) 2025년도 제8차 사외이사회 : 2025. 12. 19 (오후 2시 45분 ~ 오후 2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12.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1)]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계약 체결 승인[2)]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3)]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5)]	안건 검토 등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6)]	안건 검토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승인[7)]	안건 검토 등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8)]	안건 검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9)]	안건 검토 등				

[비고]
1)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방향성 및 영업계획·손익계획 등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와의 마케팅 계약 및 변경 승인
3) 현대오토에버와의 IT 계약 승인
4) 현대얼터너티브가 설정하는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
5)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포괄한도 승인
6)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
7)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한도 부여 관련 승인
8)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
9)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및 동 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포함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회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최종 후보자 선정 및 자격요건 검증,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7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른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그 중 1명은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였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원칙 및 후보군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감사위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사외이사 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위원 선임일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일/퇴임일	약력
서병호	사외	위원장	'25.03.28	'27.03	- (현)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 - (현) 우진 사외이사
더글라스차이	사외	위원	'24.03.27 ('22.03.31)	'26.03	- (현)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Head of FinTech Division
변광윤	사외	위원	24.03.27 ('22.05.19)	'26.03	- (현) 뉴웨이브커머스 대표
연태훈	사외	위원장(퇴임)	'23.03.29 ('21.03.24)	'25.03	- (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외이사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자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 사외이사

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그 중 1명은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2)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

■ 대표이사(최고경영자)

• 후보군 선정 절차

최고경영자(이하 '대표이사') 지원부서는 주주, 사내외임원의 추천 및 자체 검색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현 대표이사에게 대상자를 보고합니다. 대표이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을 제안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 받은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하여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 최고경영자 선임

(1) 대표이사 연임

회사는 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면, 현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검토결과와 함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임기만료일 도래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회사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위원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일, 위원장이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검토 후 의결을 통하여 연임에 대한 적정성을 결정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위원장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 회사는 신규 대표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신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신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후보군에 대한 내부검토결과와 함께 위원장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후보자로 적정한 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만일, 위원장이 후보군에서 후보자로 선정할 만한 적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위원장은 그 사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후보군 외의 자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제안 받아 적정성을 점검한 후에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사외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대표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현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일 이후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게 되거나, 사직, 퇴직, 해임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며(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 상법에 따른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고경영자 선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시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 및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승계계획을 수립하며,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규선임절차가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 비상상황: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사 2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지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다음 사항의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합니다. 만일,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지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시 다음 사항의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합니다.

①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의 관계
④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⑥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사외이사(감사위원 포함) 선임 절차

• 후보군 선정

회사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가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후보군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주주 및 사내외임원 추천자 취합 및 적격성 구비자 검색을 통한 대상자 선정

2.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대상자 적격성 검토

3. 사외이사 지원부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종 후보군 제안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후보군 선정(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

위와 같이 선임된 후보군은 이사회에도 보고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와 같이 선정된 사외이사 후보군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역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5조 제1항 제가목).

• 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 선임 절차 동일)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후보군의 적격성 검토 후 중임 필요 사외이사 선정 및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 압축

2. 사외이사 지원부서 담당 임원은 지원부서가 선정한 중임 필요 사외이사 및 압축된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장(위원장이 대상인 경우, 사내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 이하 동일)에게 송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대상자일 경우, 송부 받은 다른 위원)은 송부 받은 사항 검토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 제안(검토 결과 대상자가 사외이사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의 절차부터 재 진행)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 (부결시 1의 절차부터 재진행)

5.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정관 제29조)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 대표이사(최고경영자)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 경영성과 및 리더쉽, 비전제시, 전문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절차는 내부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1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에 전년도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점검 및 평가합니다.

점검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사외이사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관련 설문을 통해 각 사외이사 별 종합등급 산출 → 각 사외이사의 종합등급 평균 및 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의 종합등급을 4:1로 적용하여 최종 등급 산출

사외이사 및 임원간의 평가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결의안건 10개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6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3명의 후보군을 추가하고 13명의 후보군을 제외하여 총 73명의 후보군을 선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83명의 사외이사 후보군 보유). 이후 회사는 3월 4일 개최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3월 28일 개최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6월 10일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을 승인하였으며,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3명의 후보군을 추가하고 2명의 후보군을 제외하여 총 74명의 후보군을 선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7월 9일 개최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9월 9일 개최된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6차 임원후보추첨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3명의 후보군을 추가하고 1명의 후보군을 제외하였습니다. 12월 19일 개최된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2명의 후보군을 추가 승인하여 2025년말 기준 77명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을 마련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2. 06 (오후 2시 ~ 오후 2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나) 2025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40분 ~ 오후 3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2]	찬성	일부찬성	찬성	가결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주주총회에 서병호 1인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2) 주주총회에 변광윤, 서병호 2인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변광윤 위원은 본인 후보 추천에 대해 의결권 제한)

(다) 2025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40분 ~ 오후 2시 4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서병호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라) 2025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6. 10 (오후 3시 50분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마) 2025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7. 09 (오후 2시 ~ 오후 2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7.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조창현 1인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

(바) 2025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9. 09 (오후 1시 ~ 오후 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사) 2025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40분 ~ 오후 2시 45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3) 평가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및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평가 평균 점수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평가 점수를 3:1로 적용하여 최종등급 산출

- 평가항목: 상정안건의 적정성·중요성·적시성, 구성의 적정성,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등

각 사외이사 및 임원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등급:

회의체	평가	평가 의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	-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법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고, 서류심사를 통하여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배구조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지원부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후보자를 모집, 조사, 심사하여 후보군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함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 사항

(1) 대표이사 후보

■ 조창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조창현

(2) 출생연도 : 1970년

(3) 출신학교 :

달성고등학교 졸업(1989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1996년)

(4) 경력 :
현대카드 대표이사/부사장(2026년~현재)
현대카드 대표이사/전무(2025년 7월~2025년 12월)
현대카드 카드영업본부장/전무(2024년 7월~2025년 6월)
현대카드 카드영업본부장/상무(2024년 4월~2024년 6월)
현대카드 GPCC본부장/상무(2023년 10월~2024년 4월)
현대카드 PLCC본부장/상무(2021년 11월~2023년 10월)
현대카드 금융/법인사업본부장/상무(2021년 1월~2021년 11월)
현대캐피탈 금융본부장/상무(2019년 6월~2021년 1월)
현대카드 금융영업실장/이사(2018년 11월~2019년 6월)
ST Unitas 오프라인전략그룹/CVO(2017년 6월~2018년 11월)
현대카드 CLM실장/이사 (2016년 1월~2017년 5월)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 서병호
- 경력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2023년~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6년~현재)
금융위원회 AI협의회 실무단 위원(2024년~현재)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2.0 TF 위원(2024년)

(2) 후보자와의 관계

서병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부터 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후보자 조창현은 해당 기간 중 회사의 카드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서병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가 없으며, 동일 기업집단 또는 단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서병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업무 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조창현 후보자는 2004년 현대카드에 입사하였으며 실무자부터 팀장, 실장 등 단계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2016년 상무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일신 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대카드로 재입사하여 GPCC, PLCC, 금융/법인사업본부장을 두루 거친 후 현재 카드영업본부장을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현대카드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예리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창현 후보자의 경력 및 활동을 종합하여 보면, 조창현 후보자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조창현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신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후보군에 대한 내부검토결과와 함께 위원장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후보자로 적정한 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만일, 위원장이 후보군에서 후보자로 선정할 만한 적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위원장은 그 사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후보군 외의 자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제안 받아 적정성을 점검한 후에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사외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조창현 후보자는 대표이사 직을 수행함에 있어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른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 평가 :

조창현 후보자는 20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면서, 금융영업실장, 금융본부장, 금융/법인사업본부장, 카드영업본부장 등의 직을 거쳤으며, 회사 영업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창현 후보자는 다년간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 및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지식욜 구비하고 있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사 현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본인 소명

조창현 후보자는 대표이사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력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임원선임심사표 등을 제출하는 등 본인소명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회사는 대표이사 후보추천을 위해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조창현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창현 후보자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지식과 경영성과 등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창현 후보자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 변광윤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후보자 성명: 변광윤

(2) 출생연도: 1969년

(3) 출신학교:

천안고등학교 졸업(1987년)
홍익대학교 기계공학 졸업(학사/1994년)

(4) 경력

뉴웨이브커머스 대표(2022년~현재)
이베이코리아 대표(2013년~2021년)
이베이코리아 마케팅이사~사업본부장(2007년~2013년)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연태훈
- **경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0년~현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외이사(2022년~현재)
Sh수협은행 사외이사(2016년~2018년)
IBK투자증권 사외이사(2015년~2016년)
금융위원회 자문관(2013년~2015년)
KDI 연구위원(2002년~2010년)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연태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에서 2021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변광윤 후보자와는 회사에서 2022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함께 활동 하였으며, 변광윤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가 전혀 없으며, 동일 기업집단 또는 단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변광윤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변광윤 후보자는 10여년 간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운영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근무하며 디지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등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및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광윤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변광윤 후보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 및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여,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변광윤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변광윤 후보자는 현재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사외이사인 변광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 후보군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연태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변광윤 후보자의 경력을 검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변광윤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변광윤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조성표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감사위원 역시 동일하게 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평가

변광윤 후보자는 10여년 간 재직하면서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운영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근무하며 디지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변광윤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인 소명

회사는 감사위원 후보인 변광윤 후보자에게 지배구조법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선임심사표를 징구하여, 본인소명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광윤 후보자의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변광윤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변광윤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최종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변광윤 후보 본인을 제외한 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서병호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후보자 성명: 서병호

(2) 출생연도: 1973년

(3) 출신학교:

현대고등학교 졸업(1992년)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학사/1999년)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경제학(석사/2001)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경제학(박사/2006)

(4) 경력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2023년~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6년~현재)
금융위원회 AI협의회 실무단 위원(2024년~현재)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2.0 TF 위원(2024년)
하나은행 경영자문위원(2023년)
㈜우진 사외이사(2020년~현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변광윤

• **경력:**
뉴웨이브커머스 대표(2022년~현재)
이베이코리아 대표(2013년~2021년)
이베이코리아 마케팅이사~사업본부장(2007년~2013년)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변광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사에서 2022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가 전혀 없으며, 동일 기업집단 또는 단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서병호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호 후보자는 다수의 전문 자문위원 경력과 타 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및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병호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서병호 후보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 및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여,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병호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서병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연태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서병호 후보자의 경력을 검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서병호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병호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서병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감사위원 역시 동일하게 위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평가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호 후보자는 다수의 전문 자문위원 경력과 타 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서병호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인 소명

회사는 감사위원 후보인 서병호 후보자에게 지배구조법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선임심사표를 징구하여, 본인소명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병호 후보자의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병호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서병호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최종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 서병호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후보자 성명: 서병호

(2) 출생연도: 1973년

(3) 출신학교:

현대고등학교 졸업(1992년)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학사/1999년)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경제학(석사/2001)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경제학(박사/2006)

(4) 경력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2023년~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6년~현재)
금융위원회 AI협의회 실무단 위원(2024년~현재)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2.0 TF 위원(2024년)
하나은행 경영자문위원(2023년)
㈜우진 사외이사(2020년~현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성명:** 변광윤
- **경력:**
  뉴웨이브커머스 대표(2022년~현재)
  이베이코리아 대표(2013년~2021년)

이베이코리아 마케팅이사~사업본부장(2007년~2013년)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변광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사에서 2022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 교우관계가 전혀 없으며, 동일 기업집단 또는 단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서병호 후보자는 후보제안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호 후보자는 다수의 전문 자문위원 경력과 타 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및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병호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할 때, 서병호 후보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 및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여,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병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서병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활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연태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서병호 후보자의 경력을 검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서병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제안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병호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서병호 후보자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후보자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조성표 후보자는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호 후보자는 다수의 전문 자문위원 경력과 타 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후보자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습니다. 조성표 후보자는 20년에 까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후보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까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후보자는 윤리성·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후보자는 20년에 까까운 기간 동안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회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참여 및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 충실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된됩니다.

사외이사명	구분	회사명	직책	근무시간
서병호	상근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	2,080 시간
	비상근	㈜우진	사외이사	60 시간

(4) 본인 소명

본인은 37년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계기준, 감사제도, 감독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제37대 한국회계학회장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중심회계기준의 특성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 회계제도 및 감사제도 정립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회사에 대한 자문과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이론과 함께 실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카드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현대카드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표 후보자에게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서병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서병호 후보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가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후보군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주주 및 사내외임원 추천자 취합 및 적격성 구비자 검색을 통한 대상자 선정

2.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대상자 적격성 검토

3. 사외이사 지원부서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종 후보군 제안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후보군 선정(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

위와 같이 선임된 후보군은 이사회에도 보고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와 같이 선정된 사외이사 후보군의 적격성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 역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5조 제1항 가목).

■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사내외 임원 및 주주의 추천과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인물 및 뉴스 검색 등을 통해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과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말 기준 63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3명의 후보군을 제외하고 11명의 후보군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5명의 후보군을 추가하였고,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검증을 실시하여 4명의 후보군을 추가하고 1명의 후보군을 제외하였습니다.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감사 위원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8명의 후보군을 추가하고 4명의 후보군을 제외하여 2024년말 기준 83명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을 마련하였습니다.

■ 후보군 현황

- 2025년 2월 6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3	4.1%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1%	
		기타	1	1.4%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5%	
		디지털	1	1.4%	
학계	경영	회계	8	11.0%	
		재무	3	4.1%	
		조직/인사	3	4.1%	
		마케팅	4	5.5%	
		기타	3	4.1%	
	경제	경제	15	20.5%	
	디지털	데이터	5	6.8%	

		IT	3	4.1%	
	언론	언론	1	1.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5%	
법조계	법조계	법무	4	5.5%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4	5.5%	
		ESG	4	5.5%	
합계			73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68	93.2%	
업무집행책임자	4	5.5%	
외부기관	1	1.4%	
합계	73	100.0%	

- 2025년 6월 10일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4	5.4%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1%	
		기타	1	1.4%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4%	
		디지털	1	1.4%	
학계	경영	회계	8	10.8%	
		재무	3	4.1%	
		조직/인사	3	4.1%	
		마케팅	4	5.4%	
		기타	3	4.1%	
	경제	경제	13	17.6%	
	디지털	데이터	6	8.1%	
		IT	3	4.1%	
	언론	언론	1	1.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4%	
법조계	법조계	법무	5	6.8%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4	5.4%	
		ESG	4	5.4%	
합계			74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69	93.2%	
업무집행책임자	4	5.4%	
외부기관	1	1.4%	
합계	74	100.0%	

- 2025년 9월 9일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3	4.0%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0%	
		기타	1	1.3%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3%	
		디지털	1	1.3%	
학계	경영	회계	8	10.7%	
		재무	3	4.0%	
		조직/인사	3	4.0%	
		마케팅	4	5.3%	
		기타	3	4.0%	
	경제	경제	16	21.3%	
	디지털	데이터	6	8.0%	
		IT	3	4.0%	
	언론	언론	1	1.3%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3%	
법조계	법조계	법무	5	6.7%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3	4.0%	
		ESG	4	5.3%	
합계			75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70	93.3%	
업무집행책임자	4	5.3%	
외부기관	1	1.3%	
합계	75	100.0%	

- 2025년 12월 19일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4	5.2%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3.6%	
		기타	1	1.3%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2%	
		디지털	1	1.3%	
학계	경영	회계	8	10.4%	
		재무	3	3.9%	
		조직/인사	3	3.9%	
		마케팅	5	6.5%	
		기타	3	3.9%	
	경제	경제	16	20.8%	
	디지털	데이터	6	7.8%	
		IT	3	3.9%	
	언론	언론	1	1.3%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2%	
법조계	법조계	법무	5	6.5%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3	3.9%	
		ESG	4	5.2%	
합계			77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72	93.5%	
업무집행책임자	4	5.2%	
외부기관	1	1.3%	
합계	77	100.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보고일자 : 2025년 2월 6일 1분기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3	3.6%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1	1.2%	
		기타	1	1.2%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4.8%	

		디지털	2	2.4%	
학계	경영	회계	9	10.8%	
		재무	3	3.6%	
		조직/인사	3	3.6%	
		마케팅	4	4.8%	
		기타	3	3.6%	
	경제	경제	19	22.9%	
	디지털	데이터	6	7.2%	
		IT	4	4.8%	
	언론	언론	1	1.2%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4.8%	
법조계	법조계	법무	6	7.2%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5	6.0%	
		ESG	5	6.0%	
합계			83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78	94.0%	
업무집행책임자	4	4.8%	
외부기관	1	1.2%	
합계	83	100.0%	

* 2024년 12월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승인한 후보군은 2025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보고일자 : 2025년 6월 10일 2분기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3	4.1%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1%	
		기타	1	1.4%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5%	
		디지털	1	1.4%	
학계	경영	회계	8	11.0%	
		재무	3	4.1%	
		조직/인사	3	4.1%	
		마케팅	4	5.5%	
		기타	3	4.1%	

	경제	경제	15	20.5%	
	디지털	데이터	5	6.8%	
		IT	3	4.1%	
	언론	언론	1	1.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5%	
법조계	법조계	법무	4	5.5%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4	5.5%	
		ESG	4	5.5%	
합계			73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68	93.2%	
업무집행책임자	4	5.5%	
외부기관	1	1.4%	
합계	73	100.0%	

* 2025년 2월 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승인한 후보군은 2025년 2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보고일자 : 2025년 9월 9일 3분기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4	5.4%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1%	
		기타	1	1.4%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4%	
		디지털	1	1.4%	
학계	경영	회계	8	10.8%	
		재무	3	4.1%	
		조직/인사	3	4.1%	
		마케팅	4	5.4%	
		기타	3	4.1%	
	경제	경제	13	17.6%	
	디지털	데이터	6	8.1%	
		IT	3	4.1%	
	언론	언론	1	1.4%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4%	
법조계	법조계	법무	5	6.8%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4	5.4%	
		ESG	4	5.4%	
합계			74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69	93.2%	
업무집행책임자	4	5.4%	
외부기관	1	1.4%	
합계	74	100.0%	

* 2025년 6월 1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승인한 후보군은 2025년 3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보고일자: 2025년 12월 19일 4분기 정기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	관계	금융감독원	3	4.0%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3	4.0%	
		기타	1	1.3%	
산업계	산업계	금융	4	5.3%	
		디지털	1	1.3%	
학계	경영	회계	8	10.7%	
		재무	3	4.0%	
		조직/인사	3	4.0%	
		마케팅	4	5.3%	
		기타	3	4.0%	
	경제	경제	16	21.3%	
	디지털	데이터	6	8.0%	
		IT	3	4.0%	
	언론	언론	1	1.3%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4	5.3%	
법조계	법조계	법무	5	6.7%	
미래산업	미래산업	미래산업(AI, IT 등)	3	4.0%	
		ESG	4	5.3%	
합계			75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지원부서	70	93.3%	
업무집행책임자	4	5.3%	

외부기관	1	1.3%	
합계	75	100.0%	

* 2025년 9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승인한 후보군은 2025년 4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5. 02. 06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
'25. 06. 1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
'25. 09. 0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
'25. 12. 1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

5.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 이사회

- 2025년도 1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 : 2025. 01. 14 (오전 10시 30분 ~ 오전 10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

- 2025년도 1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2. 06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M포인트 마케팅계약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공통비정산 거래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자기거래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규정 개정 승인[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8]	이의 없음					
2024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수행실적 보고[9]	이의 없음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10]	이의 없음					
2024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보고[11]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12]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13]	이의 없음					
2024년 임원 변동현황 보고[14]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5]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6]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7]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8]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9]	이의 없음	

[비고]
1)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3)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의 M포인트 업무제휴 거래 승인
4) 현대오토에버와의 IT계약 체결 승인
5) 현대커머셜과의 공통비용 정산 승인
6) 현대커머셜, 블루웰넷, 현대얼터너티브와의 공통비정산 계약 체결 및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자기거래 승인
7) 내부통제기준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8)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 결과 보고
9) 법령 준수여부 점검/통제활동 등 2024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수행실적 보고
10) 2024년 감사실시 현황 등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11) 2024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
12)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2024년 4분기 법규 및 감독기관 동향보고
13) 2024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14) 2024년 임원 변동 내역 보고
15)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가 승인한 사항 보고
16) 2025년 감사팀 업무계획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7) 2025년 리스크 사업계획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8)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하였음을 보고
19) 은행 약정 연장 등 2024년 4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 2025년도 1분기 제2차 임시이사회 : 2025. 03. 04 (오후 3시 ~ 오후 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주간계약 및 정관 개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일부찬성	일부찬성	가결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은행 연장 약정 승인[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9]	이의 없음					

*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커머셜,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Fubon Life Insurance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현대카드 정관 개정 승인(겸직이사는 겸직회사 관련 승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3)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
4)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5)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
6)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
7) 현대캐피탈과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
8) 은행 연장 약정 승인
9)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라) 2025년도 1분기 제3차 임시이사회 : 2025. 03. 28 (오후 2시 ~ 오후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 겸직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은행 신규 약정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정태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변광윤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2)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기아 사내이사, 현대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승인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4)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5)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6) 은행 신규 약정 승인

- 2025년도 2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6. 13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마케팅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7]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8]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1]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2]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3]	이의 없음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2)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
3) 202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4) 현대커머셜 및 현대엘터너티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
5) 현대엘터너티브에 대한 증자 승인
6) 현대커머셜과의 대출중개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
7)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준비 등 2025년 1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8) 2025년 1분기 주요 소비자보호 활동 및 민원현황 보고
9) 감사보고서 제출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0) 20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 승인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1)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및 의결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2)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3)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 2025년도 3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 : 2025. 07. 30 (오후 4시 ~ 오후 4시 20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대표이사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7.22일임

[비고]
1) 조창현 대표이사 선임 승인
2)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 2025년도 3분기 정기이사회 : 2025. 09. 09 (오후 2시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계열회사와의 M할부 업무제휴 거래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화 자금 조달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퇴직연금 납입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5]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6]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7]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1]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캐피탈과의 M할부 업무제휴 승인
2) 외화 자금 조달 승인
3) 퇴직연금 납입 승인
4)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
5)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6) 2025년 2분기 주요 소비자보호 활동 및 민원현황 보고
7) 20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
8)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를 개정하였음을 보고
9)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보고
10)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등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1)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2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 2025년도 4분기 정기이사회 : 2025. 12. 19 (오후 3시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마케팅계약 체결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5]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6]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승인[7]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8]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10]	이의 없음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11]	이의 없음					
	2025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12]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감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3]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4]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5]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16]	이의 없음					

[비고]

1)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방향성 및 영업계획·손익계획 등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와의 마케팅 계약 및 변경 승인
3) 현대오토에버와의 IT 계약 승인
4) 현대얼터너티브가 설정하는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
5)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포괄한도 승인
6)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
7)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한도 부여 관련 승인
8)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
9)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
10)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등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11)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12) 정보보안 사규 개정 등 2025년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13) 임직원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승인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감사위원회 보고
14)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15)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임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하였음을 보고
16) 은행 약정 연장 등 2025년 3분기에 개최된 집행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 사외이사회

- 2025년도 제1차 사외이사회 : 2025. 01. 14 (오전 10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6]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해임 승인

- 2025년도 제2차 사외이사회 : 2025. 02. 06 (오후 1시 50분 ~ 오후 2시)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1]	안건 검토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2]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M포인트 마케팅계약 승인[3]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공통비정산 거래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자기거래 승인[6]	안건 검토 등				
규정 개정 승인[7]	안건 검토 등				

[비고]
1) 2024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3)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의 M포인트 업무제휴 거래 승인
4) 현대오토에버와의 IT계약 체결 승인
5) 현대커머셜과의 공통비용 정산 승인
6) 현대커머셜, 블루웰넷, 현대얼터너티브와의 공통비정산 계약 체결 및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자기거래 승인
7) 내부통제기준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 2025년도 제3차 사외이사회 : 2025. 03. 04 (오후 2시 55분 ~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연태훈	변광윤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1]	안건 검토 등				
주주간계약 및 정관 개정 승인[2]	안건 검토 등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3]	안건 검토 등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6]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7]	안건 검토 등				
은행 연장 약정 승인[8]	안건 검토 등				

[비고]
1)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커머셜,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Fubon Life Insurance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현대카드 정관 개정 승인
3) 2025년 투자금융 한도 승인
4)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5) 현대엔지니어링과의 사옥관리계약 체결 승인
6) 현대얼터너티브와의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
7) 현대캐피탈과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승인
8) 은행 연장 약정 승인

- 2025년도 제4차 사외이사회 : 2025. 03. 28 (오후 1시 40분 ~ 오후 2시)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이사 겸직 승인[2)]	안건 검토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3)]	안건 검토 등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4)]	안건 검토 등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5)]	안건 검토 등				
은행 신규 약정 승인[6)]	안건 검토 등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외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정태영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변광윤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2) 김승준 기타비상무이사의 기아 사내이사, 현대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겸직 승인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4)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
5)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승인
6) 은행 신규 약정 승인

- 2025년도 제5차 사외이사회 : 2025. 06. 10 (오후 15시 ~ 오후 15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2)]	안건 검토 등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3)]	안건 검토 등				
합작법인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 승인[5)]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6)]	안건 검토 등				

[비고]
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2) 대표이사 선임 계획 승인
3) 202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4) 현대커머셜 및 현대얼터너티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개정 승인
5) 현대얼터너티브에 대한 증자 승인
6) 현대커머셜과의 대출중개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승인

- 2025년도 제6차 사외이사회 : 2025. 07. 30 (오후 3시 50분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7. 2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대표이사 선임 승인[1]	안건 검토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2]	안건 검토 등

[비고]
1) 조창현 대표이사 선임 승인
2)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 2025년도 제7차 사외이사회 : 2025. 09. 09 (오후 1시 40분 ~ 오후 1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계열회사와의 M할부 업무제휴 거래 승인[1]	안건 검토 등				
외화 자금 조달 승인[2]	안건 검토 등				
퇴직연금 납입 승인[3]	안건 검토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4]	안건 검토 등				

[비고]
1) 현대캐피탈과의 M할부 업무제휴 승인
2) 외화 자금 조달 승인
3) 퇴직연금 납입 승인
4)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세부정책 수립 승인

- 2025년도 제8차 사외이사회 : 2025. 12. 19 (오후 2시 45분 ~ 오후 2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12.1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논의안건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1]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마케팅계약 체결 승인[2]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3]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4]	안건 검토 등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5]	안건 검토 등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6]	안건 검토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 승인[7]	안건 검토 등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8]	안건 검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9]	안건 검토 등				

[비고]
1)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방향성 및 영업계획·손익계획 등 승인
2) 현대자동차, 기아와의 마케팅 계약 및 변경 승인

3) 현대오토에버와의 IT 계약 승인
4) 현대얼터너티브가 설정하는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매입 거래 승인
5) 계열회사 등과의 자기거래 포괄한도 승인
6)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방법 및 절차 승인
7)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신용한도 부여 관련 승인
8) 채무조정내부규정 개정 승인
9)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개정 승인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2. 06 (오후 2시 ~ 오후 2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 2025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40분 ~ 오후 3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2)]	찬성	일부찬성	찬성	가결

*일부찬성 : 일부 의결권 제한으로 의결권 불행사

[비고]
1) 주주총회에 서병호 1인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2) 주주총회에 변광윤, 서병호 2인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변광윤 위원은 본인 후보 추천에 대해 의결권 제한)

- 2025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40분 ~ 오후 2시 4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0일임

[비고]
1) 서병호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2025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6. 10 (오후 3시 50분 ~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 2025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7. 09 (오후 2시 ~ 오후 2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7.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조창현 1인에 대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

- 2025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09. 09 (오후 1시 ~ 오후 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 2025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40분 ~ 오후 2시 45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서병호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결과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검증 및 변경 승인

■ 감사위원회

- 2025년도 1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2. 06 (오후 12시 50분 ~ 1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직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심의안건				
내부통제기준 개정 심의	이의 없음			
5.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4]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준법감시 활동 및 2025년 내부통제 계획 보고[5]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6]	이의 없음			

[비고]
1) 2024년 감사실시 현황 및 주요 감사활동 등 결과보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2)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3) 임직원겸직운용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적정의견 결의
4)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위원회 역할 수행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개정 심의
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의거 운영실태 검토결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6) 준법감시인의 2024년 4분기 활동내용 및 2025년 내부통제 계획 보고
7) 2024년 상반기 시재점검 등 2024 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 2025년도 제1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2. 11 (오후 3시 ~ 3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0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1]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와 영업보고서를 보고

- 2025년도 제2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 2시 3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4]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승인 등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의거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의
3)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 결의
4) 주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2025년도 제3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50분 ~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보고[1]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내용 보고

- 2025년도 제4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5 (오후 2시 ~ 2시 1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제30기 회계연도 회계 및 업무감사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결의

- 2025년도 제5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45분 ~ 2시 5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직무대행순서 결정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비고]
1)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2025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결의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3)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후 직무대행 순서 결정

- 2025년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30분 ~ 2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2]	이의 없음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3]	이의 없음				
2024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4]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5]	이의 없음				

[비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 변경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제 · 개정 사항 등 2025년 1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4)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5)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사 등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 2025년도 제6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7. 09 (오후 2시 10분 ~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비고]
1) 사내이사 선임 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검토

- 2025년도 3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9. 09 (오후 1시 10분 ~ 1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임직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2]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3]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4]	이의 없음				

[비고]
1) 임직원겸직운용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적정의견 결의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 2025년 2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3)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2025년 2분기 외부감사 검토결과 보고
4) 협력업체 거래 적정성 점검 등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 2025년도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12. 19 (오후 1시 15분 ~ 2시)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6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안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감사팀 업무계획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3]	이의 없음				
2025년 IT리스크 자체평가 보고[4]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5]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6]	이의 없음				

[비고]
1)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2026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결의
2) 2026년 내부감사팀 주요 업무계획 승인
3)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제 · 개정 사항 등 2025년 3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4) 금융감독원 IT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 IT리스크 자체평가 보고
5)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2025년 외부감사 3분기 검토결과 보고
6) 블루웰넷 종합감사 등 2025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도 1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2. 06 (오후 2시 10분 ~ 2시 50분) [안건 통지일: 2025.01.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현대카드 위험부담한도 설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조직 구조 변경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4년 4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3]	이의 없음		
'24년 4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4년 4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5]	이의 없음		
'24년 4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6]	이의 없음		
'24년 4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7]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의 최소자본적정성 비율 설정,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관리방안을 포함한 자본유지정책 수립 승인

2)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승인
3) '24년 4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
4) '24년 4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5)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등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5건, 보고사항 6건 보고
6) 충당금 모형 정기 Upgrade 승인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9건 보고
7)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9건 보고

- 2025년도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35분 ~ 2시 50분) [안건 통지일: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대체투자 한도 관리 체계 개정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험관리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 및 자료제공기간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2.28일임

[비고]
1) '25년 리스크 지계수 관리기준 조정 승인
2)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
3)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한도 관리 기준 변경 승인

- 2025년도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35분 ~ 2시 40분) [안건 통지일: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험관리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 및 자료제공기간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7일임

[비고]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2025년도 2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10분 ~ 1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06.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개정[1)]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미래전망반영 충당금 점검 보고[2]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3]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5]	이의 없음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6]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7]	이의 없음	
'25년 1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상반기 투자현황 보고[9]	이의 없음	
'25년 상반기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10]	이의 없음	

[비고]
1)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내 포트폴리오 은행대출 가이드라인 조정
2) 경제기관 전망치 반영하여 미래경기전망 충당금 점검 보고
3) '25년 1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
4) '25년 1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5)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위험(자본적정성비율, 위험부담한도 소진율, 대주주 주식취득 등)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보고
6) '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 등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3건, 보고사항 3건 보고
7) 카드론 한도체계 개편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7건 보고
8)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9건 보고
9) '25년 상반기 투자현황 보고
10) '25년 상반기 자산, 국가, 거래상대방 별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

- 2025년도 3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9. 09 (오후 3시 00분 ~ 3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09.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제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2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2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5]	이의 없음		
'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6]	이의 없음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7]	이의 없음		
'25년 2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2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제정 승인
2)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
3)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
4) '25년 2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
5) '25년 2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6)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하위 규정 개정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4건, 보고사항 4건 보고
7)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 보고
8) 부동산 담보대출 NPI 및 CRP 수립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6건 보고
9)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16건 보고

- 2025년도 4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1. 27 (오후 2시 ~ 2시 20분) [안건 통지일: 2025.11.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정기조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26년 경제 지표 전망 반영하여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산출하기 위한 PD조정계수 정기조정 승인

- 2025년도 4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 2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12.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26년 손실허용한도 설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개정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3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3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5)]	이의 없음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6)]	이의 없음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7)]	이의 없음		
'25년 3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3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5년 하반기 투자현황 보고[10)]	이의 없음		
'25년 하반기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11)]	이의 없음		

[비고]
1) 전사 사업계획 및 리스크 전략 방향 반영한 20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승인
2) '26년 손실허용한도 및 적정투자한도 설정 승인

3)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내 생존기간 지표 추가로 관리 강화 승인
4) '25년 3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5) '25년 3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6)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위험(자본적정성비율, 위험부담한도 소진율, 대주주 주식취득 등)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보고
7)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 관리규정 제정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3건, 보고사항 5건 보고
8) 투자금융 및 기업금융 위험자산 한도관리 기준 수립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2건 보고
9)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15건 보고
10) '25년 하반기 투자현황 보고
11) '25년 하반기 자산, 국가, 거래상대방 별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

■ **보수위원회**

-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30분 ~ 오후 3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연차보수체계 평가[3]	찬성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및 의결 [4]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와 운영 취지와 맞는지를 심의 승인
2)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승인

- 2025년 1분기 임시 보수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30분 ~ 오후 2시 3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1]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및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 절차를 생략함
안건제공일은 2025.03.24 일임

[비고]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30분 ~ 오후 2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특별위로금 지급[1]	찬성	찬성	가결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2]	찬성	찬성	가결
보수의 결정 및 임원 보수의 연간 한도 설정[3]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임원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위험성과의 연계성[4]	이의 없음	-
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결과[5]	이의 없음	-

[비고]
1) 퇴임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승인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 선정
3)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과 보수한도 설정
4) 임원 보수체계와 재무상황과 위험성 연계 검토 보고
5) 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 집행위원회

- 2025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 : 2025. 01. 10 (오후 3시 10분 ~ 오후 3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해외 채권 발행 승인[1]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2]	찬성	가결

[비고]
1) 해외 채권 발행 승인
2) NPL 매각 승인

- 2025년도 제2차 집행위원회 : 2025. 02. 06 (오후 4시 00분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연장 약정 승인[1]	찬성	가결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2]	찬성	가결
해외 채권 발행 승인[3]	찬성	가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4]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연장 약정 승인
2)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
3) 해외 채권 발행 승인
4)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 2025년도 제3차 집행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50분 ~ 오후 2시 5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NPL 매각 승인[1]	찬성	가결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2]	찬성	가결
CP 신규 약정 승인[3]	찬성	가결
조기상환 승인[4]	찬성	가결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5]	찬성	가결

[비고]
1) NPL 매각 승인
2)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3) CP 신규 약정 승인
4) 조기상환 승인
5)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

- 2025년도 제4차 집행위원회 : 2025. 03. 18 **(오후 4시 20분 ~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3. 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 약정 승인[1]	찬성	가결
해외 채권 발행 승인[2]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 약정 승인
2) 해외 채권 발행 승인

- 2025년도 제5차 집행위원회 : 2025. 04. 09 **(오전 10시 40분 ~ 오전 10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4.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NPL 매각 승인[1]	찬성	가결

[비고]
1) NPL 매각 승인

- 2025년도 제6차 집행위원회 : 2025. 05. 21 **(오전 10시 30분 ~ 오전 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5.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1]	찬성	가결
조기상환 승인[2]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2) 조기상환 승인

- 2025년도 제7차 집행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 오후 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조기상환 승인[1)]	찬성	가결
자회사 정관 개정 승인[2)]	찬성	가결

[비고]
1) 조기상환 승인
2) 자회사 정관 개정 승인

- 2025년도 제8차 집행위원회 : 2025. 07. 02 (오후 3시 ~ 오후 3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연장 약정 승인[1)]	찬성	가결
CP 연장 약정 승인[2)]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가결
재무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4)]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연장 약정 승인
2) CP 연장 약정 승인
3) NPL 매각 승인
4) 재무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 2025년도 제9차 집행위원회 : 2025. 08. 05 (오후 3시 10분 ~ 오후 3시 20분) [안건 통지일 :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자회사 이사회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1)]	찬성	가결
무보증 외화 공모사채 발행 승인[2)]	찬성	가결
은행 연장 약정 승인[3)]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7.28일임

[비고]
1) 자회사 이사회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2) 무보증 외화 공모사채 발행 승인
3) 은해 연장 약정 승인

- 2025년도 제10차 집행위원회 : 2025. 09. 09 (오후 3시 30분 ~ 오후 3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1)]	찬성	가결
은행 연장 약정 승인[2)]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가결

[비고]
1)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
2) 은행 연장 약정 승인
3) NPL 매각 승인

- 2025년도 제11차 집행위원회 : 2025. 11. 03 (오후 4시 30분 ~ 오후 4시 40분) [안건 통지일 :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ABS 발행 승인[1)]	찬성	가결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2)]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10.30일임

[비고]
1) ABS 발행 승인
2)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
3) NPL 매각 승인

- 2025년도 제12차 집행위원회 : 2025. 12. 19 (오후 4시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1)]	찬성	가결
단기 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승인[2)]	찬성	가결
Off-Balance ABS 조기상환 승인[3)]	찬성	가결
채권 재매입 승인[4)]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2) 단기 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승인
3) Off-Balance ABS 조기상환 승인
4) 채권 재매입 승인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연태훈 사외이사(퇴임)

연태훈 사외이사는 2025년 퇴임 전까지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감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1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대고객 사업장 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4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민원증감율과 그 사유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연태훈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검증하여 73인의 후보군 선정을 승인하였으며,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수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체계를 평가하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2025년 2월 6일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내부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카드영업지점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업무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KPI 설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 내부통제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3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보고와 관련하여 최초 보고된 계산서 대비 변경된 항목의 사유 및 금액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으며, 2025년 3월 5일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연태훈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39.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조성표 사외이사

조성표 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8회, 감사위원회 10회, 위험관리위원회 5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안관과 관련하여 기타수익 세부내용과 증가 요인에 관하여 질문하였고(설명완료), 2024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수행 실적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해킹 시도 건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025년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5년 2분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및 주요활동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 피해액 배상 의무 정책이 추진 중이므로 충당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카드론 사업과 규제와의 연관성을 질문하였고(설명완료), 계열회사와의 IT계약 체결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거래에 지출되는 비용이 소프트웨어 자산 구매 거래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조성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소집 ·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수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을 위해 기존 3인 체계를 4인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1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감 계정의 단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변경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사회 재승인 절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카드론 연체율 대비 충당금 설정 수준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재무보고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계획 및 중점 감사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미팅을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내부감사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2025년 2분기 이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2025년 2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외화차입 확대에 대응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세분화하여 원화 은행대출 비중을 분리 관리하는 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투자리스크 설정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전사 손실허용한도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되 장기자산 확대 및 차입규모 축소에 따른 금리리스크 상승분 및 연말 예상 자산 규모를 고려한

사업부문별 리스크 배분 재조정 안을 심도 있게 논의 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4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6년 경기 및 신용 시장 전망과 구제 신청 증가세에 대하여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89.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변광윤 사외이사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8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감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2회,위험관리위원회 2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1월 14일 개최된 1분기 임시이사회에서 주요집행책임자 선•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개편을 재무조직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월 6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상거래 탐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심도 있게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25년 주요 감사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025년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외화 자금 조달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목표 조달금리가 국내채권금리와 비교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와 해외 조달이 매력적인 선택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26년 사업계획 중 여신과 약정의 금액 비율이 얼마인지 질문하였고(설명완료), '26년 손익에 있어 예측치 못한 돌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28일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점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자체감사의 수행주체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운영 및 책임체계 명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활동 과정에서 요주의 인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IT 리스크 자체평가 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 사례를 고려하여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및 접근통제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주요 비즈니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위원회 내 균형 잡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2월 6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73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검증하고 승인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 개최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을 검토하고, 경영승계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74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7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5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7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으며,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를 후보군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2025년 3월까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수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는 2026년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보수의 결정 및 임원 보수에 대한 연간 한도를 심의 및 승인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보수 설계 사항이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건전한 보상체계를 구성하는 지를 확인하였으며 보수에 대한 구성, 이연지급 여부, 보수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9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서병호 사외이사

서병호 사외이사는 2025년 취임 후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5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회, 감사위원회 5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25년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2분기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감독기관 동향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AI 활용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답변완료).

서병호 사외이사는 2025년 9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테마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해당 감사활동의 착안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3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책무구조도 용역 컨설팅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최종 결과물이 적시성 있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내부감사 및 통제 점검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감사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2025년 2월 6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73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검증하고 승인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 개최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을 검토하고, 경영승계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74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7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5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7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으며,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를 후보군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5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8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감사위원회 10회, 위험관리위원회 7회, 보수위원회 3회, 집행위원회 12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더글라스 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12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 2026년 감사팀 업무계획 승인 안건과 2025년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내부감사부서가 효과적으로 감사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활동 평가 및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2월 6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73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검증하고 승인하였으며, 2025년 3월 4일 개최된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을 검토하고, 경영승계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74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7월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5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77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을 선정 승인하였으며,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를 후보군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5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24년말 수립한 사업계획 대비 추가 변경되는 사안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4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6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 요인들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전략적 방향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연체율 및 대손비용 등 주요 리스크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평가기준 및 성과급 조정 기준안, 연차보수체계 평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안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 받았으며, 각 평가의 항목과 공시 관련 내용을 검토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보수위원회에서는 2025년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보수의 결정 및 임원 보수에 대한 연간 한도를 심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보수 설계 사항이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건전한 보상체계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보수에 대한 구성, 이연지급 여부, 보수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13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린치펑 사외이사

린치펑 사외이사는 2025년 개최된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각 8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을 위해 5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요약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사외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연태훈	3	3	3	3	2	2	5	5			1	1			28	39.5
조성표	8	8	8	8			10	10	5	5					62	89.5
변광윤	8	8	8	8	7	7	5	5	2	2	2	2			64	92.0
더글라스차이	8	8	8	8	7	7	10	10	7	7	3	3	12	12	98	137.5
린치펑	8	8	8	8											32	52.0
서병호	5	5	5	5	5	5	5	5							40	57.5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회사는 다음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 가입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 계약기간: 2025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2년)

- 보험금: 총 200억원 한도

- 주요 배상범위: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 (부당행위 : 직무상의 의무 위반, 과실 및 기타 행위 등)

- 주요 면책범위: 고의에 의한 손해,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

- 사외이사 자기부담액 없음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사외이사 성명		변광윤	조성표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린치펑
1. 교육, 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1.10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나.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다.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라.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마.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	참석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사.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04 내용 : 합작회사 사업 방향(Strategy)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참석	참석	- (해당없음)
아.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6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별도일정개최	참석
자.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6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불참	- (해당없음)
차.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6 내용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불참	- (해당없음)
카.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6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불참	- (해당없음)
타.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6 내용 : 보수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불참	- (해당없음)
파.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2.27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별도일정개최	별도일정개최	별도일정개최	참석	별도일정개최
하.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3.18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갸.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4.09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냐.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5.21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댜.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자금세탁방지 운영 현황(Compliance)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랴.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합작회사 사업 전략(Strategy)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먀.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뱌.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해당없음)
샤.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참석	참석	- (해당없음)
야.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6.05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쟈.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6.06.10 내용 : 충당금 모형(RISK)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챠.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6.06.10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캬.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6.06.10 내용 : 특수관계자 거래(회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탸.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7.09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참석	참석	- (해당없음)
퍄.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7.30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법무)_상법개정 안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햐.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04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거.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04 내용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해당없음)
너.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04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더.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04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참석	참석	- (해당없음)
러.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04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머.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16 내용 : 감사위원 교육_설계평가 보고/자금관련 부정위험평가 및 공시(내부회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해당없음)
버.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16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전략)_상반기 실적 보고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서.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16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Risk)_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관리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어.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09.16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Compliance)_지배구조법 개정 대응 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저.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5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Compliance)_자금세탁방지 온라인 교육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처.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5 내용 :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커.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5 내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참석	참석	- (해당없음)
터.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5 내용 : 집행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퍼.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5 내용 : 사외이사 업무 연관 교육(전략_정보보안)_정보보안 정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허.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6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겨.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6 내용 : 보수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참석	- (해당없음)

녀. 교육, 연수 날짜 및 내용		일자 : 2025.12.16 내용 : 감사위원회 안건 사전 설명(안건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해당없음)
2. 누적 교육시간		31.5 시간	26.5 시간	26.5 시간	41.5 시간	16 시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사외이사 현황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조성표 사외이사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조성표 사외이사는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여년간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계·재무·금융 등의 연구를 계속하며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회계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성표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성표 사외이사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30여년간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성표 사외이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30여년간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 및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성표 사외이사는 윤리성·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표 사외이사는 30여년간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성표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성표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성표 사외이사는 타 회사 사외이사 겸직 사항이 없어, 당사 사외이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 30여년간 경영학 교수로서 다양한 연구활동 및 지식 갖추어 전문성 구비
나. 공정성	충족	- 회사와의 이해상충관계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직무공정성 구비
다. 윤리성, 책임성	충족	- 다년간 성실하게 연구 및 교수활동에 전념한 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윤리책임성 구비
라. 충실성	충족	- 30여년간 동일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수활동 중인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충실성 구비

■ 변광윤 사외이사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변광윤 사외이사는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15년 가까이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운영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근무하며 디지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광윤 사외이사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가 없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15년 가까이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광윤 사외이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15년 가까이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 및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광윤 사외이사는 윤리성·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15년 가까이 기업체의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변광윤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광윤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광윤 사외이사는 타 회사 사외이사 겸직 사항이 없어, 당사 사외이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 15년 가까이 기업체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 및 디지털 분야의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구비
나. 공정성	충족	- 회사와의 이해상충관계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직무공정성 구비
다. 윤리성, 책임성	충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윤리책임성 구비
라. 충실성	충족	- 15년 가까이 꾸준히 기업체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한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충실성 구비

■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약 3년간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금융관련 실무와 경영의 경험을 구비하고 있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감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 및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윤리성·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 준비를 충실히 하고,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는 국내 타 회사 임원 겸직 사항이 없어, 당사 사외이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 대만 푸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금융 및 경영 관련 전문지식 구비
나. 공정성	충족	- 회사와의 이해상충관계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직무공정성 구비

	다. 윤리성, 책임성	충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윤리책임성 구비
	라. 충실성	충족	- 대만 푸본그룹에서 성실하게 재직한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충실성 구비

■ 린치펑 사외이사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린치펑 사외이사는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회사가 경영상 주의해서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특히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린치펑 사외이사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가 없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안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린치펑 사외이사는 공정성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 및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린치펑 사외이사는 윤리성·책임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린치펑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대만의 푸본그룹에서 임원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린치펑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 준비를 충실히 하고, 이사회에 적극

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린치펑 사외이사는 충실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린치펑 사외이사는 국내 타 회사 임원 겸직 사항이 없어, 당사 사외이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 대만 푸본그룹에서 재직하면서 금융 및 경영 관련 전문지식 구비
	나. 공정성	충족	- 회사와의 이해상충관계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직무공정성 구비
	다. 윤리성, 책임성	충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윤리책임성 구비
	라. 충실성	충족	- 대만 푸본그룹에서 성실하게 재직한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충실성 구비

■ 서병호 사외이사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회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경력 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연태훈 사외이사는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금융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며 다양한 경험 및 높은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사외이사는 전문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정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사외이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윤리성 및 책임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사회구성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 및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사외이사는 윤리성·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는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사외이사는 20년 이상 금융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서병호 사외이사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병호 사외이사는 충실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병호 사외이사는 우진㈜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연간 120시간(1일 평균 0.33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 20년 이상 금융연구위원로서 활발할 연구활동 및 지식 갖추어 전문성 구비
나. 공정성	충족	- 회사와의 이해상충관계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직무공정성 구비
다. 윤리성, 책임성	충족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윤리책임성 구비
라. 충실성	충족	- 20년 이상 꾸준히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활동중인 점 및 사외이사 활동 고려할 때 충실성 구비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2025년 회사는 사외이사(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가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회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연임시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필요한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총 재직기간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7항, 정관 제30조 제2항,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활동내역 등에 대해 매년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평가주체: 사외이사+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식: 사외이사 및 이사회 운영 담당 임원 설문평가 실시 → 항목별 등급 사외이사 평가: 임원 평가 4:1 비율로 하여 산출 → 항목별 등급 평균하여 종합평가 등급 산출
- 평가결과는 매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위 평가주체 · 방식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향

2025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사외이사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이사회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설 관련 설문을 통해 각 사외이사 별 종합등급 산출 → 각 사외이사의 종합등급 평균 및 이사회 담당 임원의 종합등급을 4:1로 적용하여 최종 등급 산출

사외이사 및 임원간의 평가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사외이사	종합평가 결과					평가 의견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서병호	A	A	A	S	A	- 자본시장 및 금융경제 전문가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방향 예측 등 풍부한 전문지식을 통해 현실 감각 있는 이사회 논의에 기여함 - 승인 안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유지, 논리적인 의사소통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함
변광윤	A	S	A	A	A	- 다수 기업을 운영한 경험에서 축적한 경영 관련 지식과 노하우로 이사회 안건에 관한 현실감각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 - 법령 및 규제 환경 변화에 관한 한 발 앞선 의견 제시로 심층적인 사전 검토를 가능하게 함
조성표	S	A	S	A	S	-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학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안건들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전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 - 이사회, 위원회 및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더글라스 차이	A	A	A	A	A	- 대만 금융지주의 임원으로서 글로벌 금융 경험을 보유하고, 금융그룹 간의 전략적 연계, 자본시장에 관한 이해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함 - 전략적 투자자가 선임한 사외이사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안정감 있는 균형을 유지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린치펑	A	A	A	A	A	- 대만 내 다양한 기업을 운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다양한 회사의 고문, 대표로서 경영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이사회 안건의 균형감 있는 검토에 기여함 - 회사가 글로벌 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해외 시장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흐름의 변화를 인지하는데 기여함

(3) 외부평가

회사는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25년 회사 선임사외이사 변광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주재하여 이사회 안건이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과 관련된 아래의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러한 선임사외이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개최된 1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주요집행책임자 선•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개편을 재무 조직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2월 6일 개최된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이상거래 탐지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심도 있게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25년 주요 감사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외화 자금 조달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목표 조달금리가 국내채권금리와 비교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와 해외 조달이 매력적인 선택인지 질문하였습니다(설명완료).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는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 안건과 관련하여 '26년 사업계획 중 여신과 약정의 금액 비율이 얼마인지 질문하였고(설명완료), '26년 손익에 있어 예측치 못한 돌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변광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사의 현안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Governance팀

- 조직구성 : 팀장(Senior Manager) 1명, 팀원 3명(Manager 1명, Associate 2명)

- 지원내역 :

  •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 후보군/후보 대상자 취합 및 선정
  • 사외이사 후보군 및 후보 적격성 점검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연태훈

- 재직기간: 4년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9,250,000	
	기본금	17,250,000	- 기본금 6,900만원 : 월 별 5,750,000원 X 3개월('25년 1월~3월)
	참석수당	2,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4회 : '24년 12월 참석수당 '25년 1월 지급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2) 조성표

- 재직기간: 약 3년 9개월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3,000,000	
	기본금	69,000,000	- 기본금 6,900만원 : 월 별 5,750,000원 X 12개월
	참석수당	4,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8회 : '23년 12월 참석수당 '24년 1월 지급 (1회) : '24년 12월 참석수당 '25년 1월 지급 예정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회	- 본인 및 가족 1인 종합검진(12월)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3) 변광윤

- 재직기간: 약 3년 9개월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7,000,000	
	기본금	69,000,000	- 기본금 6,900만원 : 월 별 5,750,000원 X 12개월
	선임사외이사수당	4,000,000	- 선임사외이사 수당 신설 ('25.9월) : 월 별 1,000,000원 X 4개월
	참석수당	4,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8회 : '23년 12월 참석수당 '24년 1월 지급 (1회) : '24년 12월 참석수당 '25년 1월 지급 예정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4) 더글라스차이

- 재직기간: 약 3년 9개월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3,000,000	
	기본금	69,000,000	- 기본금 6,900만원 : 월 별 5,750,000원 X 12개월
	참석수당	4,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8회 : '23년 12월 참석수당 '24년 1월 지급 (1회) : '24년 12월 참석수당 '25년 1월 지급 예정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5) 린치펑

- 재직기간: 약 3년 5개월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73,000,000	
	기본금	69,000,000	- 기본금 6,900만원 : 월 별 5,750,000원 X 12개월
	참석수당	4,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8회 : '23년 12월 참석수당 '24년 1월 지급 (1회)

			: '24년 12월 참석수당 '25년 1월 지급 예정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6) 서병호

- 재직기간: 약 9개월

-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4,491,940	
	기본금	52,491,940	- 기본금 6,900만원 : '25.3월 일할 계산 741,940원 ('25.3.28부 선임, 4일분) : 월 별 5,750,000원 X 9개월
	참석수당	2,000,000	- 이사회 1회 참석 당 50만원 X 4회 : '25년 12월 참석수당 '26년 1월 지급 예정 (1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용

회사는 사외이사가 속한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이명식	'17.03.23	'21.03.24	4년 (중)	감사위원회 위험위('17.03~'17.06) 집행위('17.03~'17.06) 보수위('18.10~'18.12)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장	한국FP협회 이사 및 감사['03~'19]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95~'19]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09~'19]
이상훈	'17.03.23	'21.03.24	4년 (중)	감사위('17.03~'19.03) 집행위('17.03~'19.03) 위험위('17.03~'19.03) 임추위('19.03~'21.03) 보수위('19.03~'21.03)	-	AFFINITY EQUITY PARTNERS 한국 총괄대표['07~'22]
박동수	'19.03.28	'21.03.24	2년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위원장 보수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전무)['80~'12]

최종범	'19.03.28	'22.03.31	3년 (중)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추위원장 ('19.3~'21.3) 선임사외이사 ('21.3~'22.3)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21~'22.3]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02~'21]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교수['92~'01]
김의철	'19.03.28	'22.05.19	3년 2개월 (중)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보수위('22.02~'22.05) 임추위('22.02~'22.05)	위험위원장 ('21.3~'22.3)	AFFINITY EQUITY PARTNERS 한국 부대표['02~'22]
신성환	'21.03.24	'22.03.18	1년	감사위 위험위	감사위원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95~'22.3] 한국금융원구원 원장['15~'18]
연태훈	'21.03.24	'25.03.31	4년 (중)	보수위 임추위 감사위('22.07~'25.3) 집행위('22.09~'23.03)	보수위원장 임추위원장 선임사외이사 ('22.3~'25.3)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10~현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사외이사['22~현재] KDI 연구위원['02~'10]
정익수	'21.03.24	'22.02.18	11개월	보수위 임추위	-	AFFINITY EQUITY PARTNERS 한국 대표['10~'22]
조성표	'22.03.31	'26.03.27	3년 9개월 (중)	감사위 위험위('25.03~현재)	감사위원장 ('22.3~현재) 위험위원장 ('25.3~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24~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86~'23] 한국회계학회 회장['18~'19]
변광윤	'22.03.31	'26.03.27	3년 9개월 (중)	위험위('22.03~'25.3) 임추위('22.05~현재) 보수위('22.09~현재) 감사위('25.3~현재)	위험위원장 ('22.3~'25.3) 보수위원장 ('25.3~현재) 선임사외이사 ('25.3~현재)	뉴웨이브커머스 대표['22~현재] 이베이코리아 대표['13~'21]
더글라스 차이	'22.03.31	'26.03.27	3년 9개월 (중)	감사위 임추위 위험위 보수위 집행위	-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Head of FinTech Division['23~현재] Fubon Financial Holding Co., Ltd. Deputy Division Head of Fintech Division VP['21~'23]
린치펑	'22.07.27	'26.03.27	3년 5개월 (중)	-	-	Fubon Multimedia Technology Senior Advisor['22~현재] Fubon Gehua(Beijing) Enterprise Chairman['12~'24]
서병호	'25.03.28	'27.03.28	9개월	감사위 임추위	임추위원장 ('25.3~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진 사외이사

* 감사위(감사위원회),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보수위원회), 위험위(위험관리위원회), 집행위(집행위원회)

* 사외이사 임기와 임기불일치시만 위원회 임기 명시

6.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회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내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원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 상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9일 개최된 2016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 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영승계원칙을 승인하였습니다.

<붙임. 현대카드 지배구조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회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① 소극적 자격요건 : 상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적극적 자격요건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 후보군 선정 절차

최고경영자(이하 '대표이사') 지원부서는 주주, 사내외임원의 추천 및 자체 검색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 현 대표이사에게 대상자를 보고합니다. 대표이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을 제안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 받은 후보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하여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하여 2024년 6월 19일에 개최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승인 결과는 2024년 3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24년말 현재 총 1명의 기본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 대표이사 연임

회사는 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면, 현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검토결과와 함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

게 임기만료일 도래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회사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연임을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통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위원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일, 위원장이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검토 후 의결을 통하여 연임에 대한 적정성을 결정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위원장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원회에 제안하여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현 대표이사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 회사는 신규 대표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신규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후보군에 대한 내부검토결과와 함께 위원장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후보자로 적정한 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만일, 위원장이 후보군에서 후보자로 선정할 만한 적정한 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위원장은 그 사유를 회사에 통지하고 후보군 외의 자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제안 받아 적정성을 점검한 후에 회사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사외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절차

대표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현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현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일 이후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게 되거나, 사직, 퇴직, 해임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며(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 상법에 따른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고경영자 선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시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일 및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승계계획을 수립하며,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규선임절차가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 비상상황: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사 2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지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다음 사항의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합니다. 만일,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지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시 다음 사항의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합니다.

①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의 관계
④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⑥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2) 비상계획

회사는 대표이사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40 조 제 2 항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업무담당이사 순으로 하며, 해당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해당 직급을 더 오래 수행한 자가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역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영승계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주주총회/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됩니다(해당 후보가 이미 이사인 경우 주주총회 절차 생략).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정태영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 평가 :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정태영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 없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회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 자격요건 점검 결과

정태영 대표이사는 1987년부터 약 15년간 회사의 계열회사인 현대정공(현재 현대모비스) 동경지사장, 샌프란시스코 지사장, 미주 및 멕시코법인 법인장 등을 거쳐 현대모비스 기획재정본부장, 기아자동차 구매본부 본부장 등의 직을 거쳤으며, 2003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의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정태영 대표이사는 수시로 회사의 구성원들과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년간 회사 및 다른 금융회사의 CEO로 재직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있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회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건전경영을 위해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정태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조창현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 평가 :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조창현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 없음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회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7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임시에도 동일할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일 것
• 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 자격요건 점검 결과

조창현 후보자는 2004년 현대카드에 입사하였으며 실무자부터 팀장, 실장 등 단계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2016년 상무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일신 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대카드로 재입사하여 GPCC, PLCC, 금융/법인사업본부장을 두루 거친 후 현재 카드영업본부장을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현대카드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예리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조창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선임 내역

회사는 김덕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2025년 2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검토 및 압축한 후, 그 결과를 서병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서병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조창현 후보자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및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대표이사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조창현 후보자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제안하였습니다. 서병호 위원장으로부터 조창현 후보자를 신규 대표이사 후보로 제안 받은 회사는 이를 사외이사 전원에게 통지하고, 조창현 후보자가 신규 대표이사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병호 위원장은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조창현 후보자를 신규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선정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로 제안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병호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후보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결을 통해 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에 조창현 후보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역 및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결과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선임 절차 운영 현황

구분	조창현	비고
2025. 6. 5	지원부서 후보군 검토 및 압축	
2025. 6. 10	서병호 위원장 후보군 검토 및 선정	

2025. 6. 10	대표이사 선임계획 승인	2분기 정기이사회
2025. 7. 4~7. 5	사외이사 조창현 후보자 적정성 검토	
2025. 7. 6	서병호 위원장 후보 제안	
2025. 7. 9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7. 30	대표이사 선임 승인	3분기 제1차 임시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 규범에 따라 후보군 선발,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2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지원은 최고경영자 지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하여 2025년 6월 10일에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과 3명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승인 결과는 2025년 3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2025 년 6 월 10 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 년 3 분기 정기이사회 보고)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3	100%	지원부서 추천
외부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공공기관			
	기타			
합계		3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최고경영자			
이사회			
주주			
외부기관			
기타	3	100%	지원부서 추천
합계	3	100%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 년 6 월 10 일 개최된 제 4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최고경영자 승계계획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중 후보군 선정 원칙, 최고경영자 후보군, 승계절차별 적정성과 진행일정, 추진 주체 등 경영승계 계획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였고, 점검결과 현재의 승계계획이 적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은 회사 내 인사담당부서인 카드H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팀에서는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경영승계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동 팀에는 경영승계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2025년 6월 10일에 개최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과 2명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을 승인받았습니다.

- 부서명 : 카드 HR 팀
- 직원수 : 2 명
- 담당자 : 팀장 1 명(Senior Manager), 팀원 1 명(Manager)

- 운영내역 :

일자	운영내역	비고
2025년 6월 10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원칙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선정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
2025년 7월 9일	대표이사 후보 추천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승인

7. 감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 개선, 나아가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을 할뿐만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며,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점검결과를 보고 받으며, 필요 시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리스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상감사 업무를 감사실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실장은 2025년 개최된 이사회 총 8회, 보수위원회 총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7회 등의 안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보고 및 2024년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제출,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운영계획 등을 담당임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5년도 1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02.06]
- 제3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2025년도 제1차 임시감사위원회_2025.02.1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2025년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06.10]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등

① 외부감사인 선정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10조, 정관 제47조 제8항)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 감사위원회의 준수사항 및 평가기준 수립 → 회계법인 제안요청 → 대면평가 및 선정 → 외부감사인 계약
- 평가항목 및 기준 : 감사/용역 경력 등 감사 수행능력, 감사품질 관리 적정성, 감사수행 전략, 감사 투입 입력/시간/보수의 적정성 등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전 수립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24년 11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제안서 검토 및 별도 대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면회의에서 최종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을 '24년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에서 2025 ~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인 해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는 선정시 수립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가 포함된 감사업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사항과 감사위원회 및 회사와의 Communication,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공정성 · 전문가적 의구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는 2025년 1분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2025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는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고 외부감사인이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감사업무 수행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수행이 금지되는 업무에 대한 비감사용역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지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용역의 수행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및 외부감사 활동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일정 및 감사범위, 독립성 관리 절차,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집중감사 등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검토)결과, 집중감사항목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Communication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기(분기1회) 감사위원회에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21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감독과 관련하여 보고받고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2025년도 제2차 임시 감사위원회_2025.03.04]
- 2025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보고 [2025년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06.10]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2025년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06.10]
- 2025년 2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2025년도 3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09.09]
-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2025년도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_2025.12.19]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반기 1회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및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경영진의 참석없이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회계감사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전보고 [2025.02.26]
- 2025년 1분기 회계감사 검토결과 및 및 2024년 회계감사 계획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전보고 [2025.06.05]
- 2025년 2분기 회계감사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전보고 [2025.09.04]
- 2025년 3분기 회계감사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전보고 [2025.12.16]

(다) 감사실장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 동의권과 평가권한을 갖고, 감사실장 임면에 대한 동의 및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6조, 제19조).

- 감사실장 임면에 대한 동의 : 2024년 감사위원회 승인 [2024.03.27]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평가 :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 내부감사 운영 적정성,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2024.12.20]

이에 따라 감사실장은 위임받은 업무 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2025년 총 4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상법 제447조의4),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보고됩니다(정관 제47조 제3항).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하여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론 및 권고사항 등을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영업보고서 역시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의 검토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② 외부감사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외부감사법 제4조), 지정된 외부감사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 회사(또는 감사위원회 포함)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23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았으며, 2024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2024년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회사는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았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감사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 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고(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

이에 따라 회사는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2025년 1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근거, 재무제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설계된 통제활동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2025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2026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① 내부감사

감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행합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5조, 제1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능별 프로세스의 유효성 평가, 문제점 적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감사계획을 승인하였고, 감사실장으로부터 2025년 매분기 정기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② 준법감시 활동 보고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활동계획을 보고받아 준법감시인 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내부통제기준 제27조, 준법감시인운영규정 제6조), 정관 등 관련 사규의 개정 이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의 활동보고를 포함한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정기감사위원회(1월),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6월), 3분기 정기감사위원회(9월),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12월)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지배구조법령 개정 및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등 규제기관의 동향 및 내부통제실태 점검, 내부통제교육 실시 현황을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감사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15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서별 위험요소 등 총 9개 부문에 관하여 리스크의 인식 여부,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제수단 고려 여부 등 117개 점검항목을 평가한 결과, 적절히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4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는 2025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25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2026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나. 구성

(1) 총괄

■ 구성원칙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 되어야 합니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_정관 제46조 제2항).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지배구조법 제6조에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된 후에도 이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총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에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세부경력은 이사회 구성원 참조).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조성표 사외이사, 변광윤 사외이사, 서병호 사외이사, 더글라스 차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되며(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제1항), 현재 감사위원장은 2024년 3월 27일 임시 감사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조성표 사외이사입니다.

■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입니다(정관 제30조). 단,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잔여임기 전제로 재선임 가능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성표	사외	감사위원장	'22.03.31 ('24.03.27 연임)	'26.03

더글라스 차이	사외	감사위원	'22.03.31 ('24.03.27 연임)	'26.03
변광윤	사외	감사위원	'25.03.28	'26.03
서병호	사외	감사위원	"25.03.28	'27.03

- 변광윤, 서병호 감사위원은 2025년 3월 28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변광윤 감사위원 임기 : 사외이사 임기만료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는 2025년 4회의 정기회의와 6회의 임시회의(총 10회)가 소집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 입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제3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승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승인, 감사위원 선임 승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보수한도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4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5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6년 1분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5년도 1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2. 06 (오후 12시 50분 ~ 1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직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심의안건				
내부통제기준 개정 심의	이의 없음			
5.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4]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준법감시 활동 및 2025년 내부통제 계획 보고[5]	이의 없음			
2024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6]	이의 없음			

[비고]
1) 2024년 감사실시 현황 및 주요 감사활동 등 결과보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2)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3) 임직원겸직운용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적정의견 결의
4)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위원회 역할 수행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개정 심의
5)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의거 운영실태 검토결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6) 준법감시인의 2024년 4분기 활동내용 및 2025년 내부통제 계획 보고

7) 2024년 상반기 시재점검 등 2024 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나) 제2025년도 제1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2. 11 (오후 3시 ~ 3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0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1)]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와 영업보고서를 보고

(다) 제2025년도 제2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 2시 3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4)]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승인 등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의거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의
3)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 결의
4) 주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라) 제2025년도 제3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50분 ~ 4시)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보고[1)]	이의 없음			

[비고]
1) 제30기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내용 보고

(마) 제2025년도 제4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05 (오후 2시 ~ 2시 1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연태훈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제30기 회계연도 회계 및 업무감사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결의

(바) **제2025년도 제5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45분 ~ 2시 5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서병호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직무대행순서 결정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감사위원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비고]
1)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2025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결의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3)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후 직무대행 순서 결정

(사) 제2025년도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30분 ~ 2시)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2]	이의 없음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3]	이의 없음				
2024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4]	이의 없음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5]	이의 없음				

[비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 변경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제 · 개정 사항 등 2025년 1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4)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2025년 외부감사 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5)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사 등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아) 제2025년도 제6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5. 07. 09 (오후 2시 10분 ~ 2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7.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주주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사내이사 선임 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검토

(자) 제2025년도 3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09. 09 (오후 1시 10분 ~ 1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임직원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2]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3]	이의 없음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4]	이의 없음				

[비고]
1) 임직원겸직운용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적정의견 결의
2)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 2025년 2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3)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2025년 2분기 외부감사 검토결과 보고
4) 협력업체 거래 적정성 점검 등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차) 제2025년도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 : 2025. 12. 19 (오후 1시 15분 ~ 2시)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사외이사 성명	조성표	변광윤	연태훈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026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안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감사팀 업무계획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준법감시 활동 보고[3]	이의 없음				
2025년 IT리스크 자체평가 보고[4]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검토결과 보고[5]	이의 없음				
2025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6]	이의 없음				

[비고]
1)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2026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결의
2) 2026년 내부감사팀 주요 업무계획 승인
3) 내부통제위원회 역할로서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제 · 개정 사항 등 2025년 3분기 준법감시 관련 활동 보고
4) 금융감독원 IT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 IT리스크 자체평가 보고
5)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운영 모범사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2025년 외부감사 3분기 검토결과 보고

6) 블루월넛 종합감사 등 2025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3) 평가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 이사회 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감사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위원 평가 점수와 감사위원회 운영 담당임원 평가 점수를 3:1로 적용하여 최종등급 산출

-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 · 전문성, 개최빈도, 안건의 적정성 · 중요성,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등

각 사외이사 위원 및 임원 간의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 위원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회의체	평가	평가 의견
감사위원회	A	-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감독하여 금융사고 등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사회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회계·재무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되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경과 등을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 1회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25년 2월 6일	1분기 정기감사위원회	2024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임직원(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2024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개선 보고
2025년 3월 4일	제2차 임시감사위원회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20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025년 3월 5일	제4차 임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2025년 3월 28일	제5차 정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직무대행순서 결정 승인
2025년 6월 10일	2분기 정기감사위원회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2025년 9월 9일	3분기 정기감사위원회	임직원(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위험평가
		2025년 2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2025년 12월 19일	4분기 정기감사위원회	2026년 감사팀 업무계획 승인
		2025년 3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조치 · 개선 보고

8.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을 위임 받아 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하며 적정투자한도와 손실허용한도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위험관리책임자, 재무 및 경영관리 조직, 채권관리 조직, 금융 사업 담당 조직, 금융 외 사업 담당 조직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험관리 기본방침과 기준을 근거로 회사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매 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로서 사업계획 달성 및 추가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고려하여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배분 받은 위험부담한도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협의회 안건에 대해 매 분기 보고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회사가 경영활동 상 부담해야 하는 각종 위험을 합리적으로 인식, 측정, 평가하고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해 2025년에는 매 분기 총 4회에 걸쳐(2월 6일, 6월 10일, 9월 9일, 12월 19일) 대손비용, 연체율, 회수율 등 주요 리스크 지표가 사업계획 내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을 통해 자산의 건전성과 감독기준 요적립액의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지표를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이하 '2분기 위험괸리위원회')에서는 경기 전망을 반영한 '25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점검 내용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개최된 4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4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6년 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정기조정 PD조정계수를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3월 4일 개최된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4년 말 수립한 사업계획 대비 변화된 대외 환경 및 금융자산 성장 계획을 반영하여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재설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개최된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이하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6년 전사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리스크 전략 방향성 (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전망, ② 정부의 채무자 보호 정책 확대 등 영향 구제 신청은 증가세 지속, ③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로 건전성 유지) 반영하여 20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시장 의존도 축소를 위해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내 차입 포트폴리오 은행대출 가이드라인 조정을 승인하였습니다.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관리 지표, 위기대응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지표를 추가 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로서 2025년 2월 6일 개최된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이하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최소자본적정성 비율 및 소속금융회사에 배분한 위험부담한도를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2025년 총 4회에 걸쳐 (2월 6일, 6월 10일, 9월 9일, 12월 19일)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부담한도, 위험관리현황,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33건에 대해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해 2025년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 안건 24건,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 안건 49건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가용자본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경영활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여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가용자본 내 관리되어 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 분기 총 4회에 걸쳐 (2월 6일, 6월 10일, 9월 9일, 12월 19일) '25년도 허용한도 소진율 현황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용 가능한 자본 증가 및 변화된 사업환경 등을 반영하여 '25년 손실허용한도를 재설정하였고, 2025년 9월 9일 개최된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이하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전사 손실허용한도는 유지하고 금리리스크 및 금융/법인 자산 계획 변경 반영하여 세부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변경 (신판 및 투자리스크 허용한도는 유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6년 부담가능 위험수준을 가용자본의 90% 수준인 2조 8,500억을 손실허용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 금융 사업 환경 변화 반영하여 대체투자 총한도,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별(부동산)/거래상대방별 한도 기준 설정을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매 반기(6월 10일, 12월 19일)에는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투자 Exposure 산출 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다)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회사는 경영활동에 수반하는 각종 리스크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주요 원칙을 리스크관리규정에 명시하고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의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법 상 위험관리조직의 역할과 구성 변경 시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조직변경 반영 및 사업부 담당 조직을 구분하여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마)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활동에 수반하는 각종 리스크 관리에 사용되는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적절한지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 기타

상기의 내용 외에도 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하거나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 구성원칙

위험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하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를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고 있어,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조창현 사내이사, 조성표 사외이사,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 입니다.

■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성표 사외이사 입니다..

■ 임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정관 제30조).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위원 선임일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일/사임일
조창현	상임	위원	'25.07.30	'28.07
조성표	사외	위원장	'25.03.28 ('25.03.28)	'26.03
더글라스차이	사외	위원	'24.03.27 ('22.03.31)	'26.03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기 4회, 임시 3회 총 7회 소집되었으며, 위원의 참석률은 100%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 2월 6일에 개최된 1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4년 4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24년 4분기 유동성위기 모니터링 결과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24년 4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11건, '24년 4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9건, '24년 4분기 거액심사위원회 및 심사협의회 승인사항 9건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 위험관리조직 구조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3월 4일에 개최된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5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변경안,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대체투자 한도 관리 체계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8일에 개최된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0일에 개최된 2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미래전망반영 충당금 점검, '25년 1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25년 1분기 유동성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6건, '25년 1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7건, '25년 1분기 거액심사위원회 및 심사협의회 승인사항 9건, 투자현황 및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개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9월 9일에 개최된 3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5년 2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유동성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8건,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25년 2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6건, '25년 2분기 거액심사위원회 및 심사협의회 승인사항 16건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으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정책 및 기준 제정,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손실허용한도 재설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에 개최한 4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6년 경기전망을 반영한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정기조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9일에 개최된 4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5년 3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25년 3분기 유동성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8건, '25년 3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2건, '25년 3분기 거액심사위원회 및 심사협의회 승인사항 15건, 투자현황 및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26년 손실허용한도,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개최 내역

(가) 2025년도 1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2. 06 (오후 2시 10분 ~ 2시 50분) [안건 통지일: 2025.01.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현대카드 위험부담한도 설정)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조직 구조 변경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4년 4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3]	이의 없음			
'24년 4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4년 4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5]	이의 없음			
'24년 4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6]	이의 없음			
'24년 4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7]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의 최소자본적정성 비율 설정, 위험부담한도 설정 및 관리방안을 포함한 자본유지정책 수립 승인
2)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승인
3) '24년 4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
4) '24년 4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5)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등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5건, 보고사항 6건 보고
6) 충당금 모형 정기 Upgrade 승인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9건 보고
7)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9건 보고

(나) 2025년도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35분 ~ 2시 50분) [안건 통지일: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변광윤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5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체투자 한도 관리 체계 개정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험관리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 및 자료제공기간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2.28일임

[비고]
1) '25년 리스크 지계수 관리기준 조정 승인
2)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
3)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한도 관리 기준 변경 승인

(다) 2025년도 1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35분 ~ 2시 40분) [안건 통지일: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험관리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 및 자료제공기간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3.27일임

[비고]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라) 2025년도 2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10분 ~ 1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06.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개정[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미래전망반영 충당금 점검 보고[2)]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3)]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5)]	이의 없음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6)]	이의 없음			
'25년 1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7)]	이의 없음			
'25년 1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상반기 투자현황 보고[9)]	이의 없음			
'25년 상반기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10)]	이의 없음			

[비고]
1) 유동성리스크 관리 지표 내 포트폴리오 은행대출 가이드라인 조정
2) 경제기관 전망치 반영하여 미래경기전망 충당금 점검 보고
3) '25년 1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
4) '25년 1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5) '25년 1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위험(자본적정성비율, 위험부담한도 소진율, 대주주 주식취득 등)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보고
6) '25년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유지정책 수립 등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3건, 보고사항 3건 보고
7) 카드론 한도체계 개편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7건 보고
8)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9건 보고
9) '25년 상반기 투자현황 보고
10) '25년 상반기 자산, 국가, 거래상대방 별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

(마) 2025년도 3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09. 09 (오후 3시 ~ 3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09.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제정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2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2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5)]	이의 없음			
'25년 2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6)]	이의 없음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7)]	이의 없음			
'25년 2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2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비고]
1)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제정 승인
2) 투자리스크 산출방법 개정 승인
3) '25년 손실허용한도 재설정 승인
4) '25년 2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
5) '25년 2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6)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하위 규정 개정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4건, 보고사항 4건 보고
7)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통합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 보고
8) 부동산 담보대출 NPI 및 CRP 수립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6건 보고
9)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승인사항 16건 보고

(바) 2025년도 4분기 임시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1. 27 (오후 2시 ~ 2시 20분) [안건 통지일: 2025.11.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정기조정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26년 경제 지표 전망 반영하여 '26년 미래전망 반영 충당금 산출하기 위한 PD조정계수 정기조정 승인

(사) 2025년도 4분기 정기 위험관리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 2시 30분) [안건 통지일: 2025.12.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조성표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6년 손실허용한도 설정 승인[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개정 승인[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3분기 주요 리스크 지표 보고[4]	이의 없음			
	'25년 3분기 유동성 현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보고[5]	이의 없음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 보고[6]	이의 없음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안건 보고[7]	이의 없음			
	'25년 3분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보고[8]	이의 없음			
	'25년 3분기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 승인사항 보고[9]	이의 없음			
	'25년 하반기 투자현황 보고	이의 없음			
	'25년 하반기 대체투자 한도자산 관리현황 보고[11]	이의 없음			

[비고]
1) 전사 사업계획 및 리스크 전략 방향 반영한 20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 승인
2) '26년 손실허용한도 및 적정투자한도 설정 승인
3)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내 생존기간 지표 추가로 관리 강화 승인
4) '25년 3분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충당금 및 준비금 현황, 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등 주요 리스크 지표
5) '25년 3분기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 ALM 비율, 차입 포트폴리오, 차입 만기 분포 및 자산/부채 만기 구성,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6) '25년 3분기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위험(자본적정성비율, 위험부담한도 소진율, 대주주 주식취득 등)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보고
7)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이해상충 관리규정 제정 등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심의사항 3건, 보고사항 5건 보고
8) 투자금융 및 기업금융 위험자산 한도관리 기준 수립 등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2건 보고
9) 임시, 기본, 보증, 포괄 한도 부여 등 거액심사위원회/심사협의회/국세지방세(임시) 15건 보고
10) '25년 하반기 투자현황 보고
11) '25년 하반기 자산, 국가, 거래상대방 별 대체투자 자산한도 관리현황 보고

(3) 평가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위원 평가 점수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평가 점수를 2:1로 적용하여 최종등급 산출

-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전문성, 개최빈도, 안건의 적정성·중요성,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등

각 사외이사 위원 및 임원 간의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 위원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등급:

회의체	평가	평가 의견
위험관리위원회	S	-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위험관리 활동 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수행하고 있음. 2025년 중에는 총 4번의 정기 위원회와 3번의 임시 위원회가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음. - 위원회는 연초 대외환경 변화와 금융자산 성장계획의 변동을 반영하여 '24년 말 수립한 '25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연말에는 '26년의 전사 사업계획 및 리스크 전략 방향을 반영하여 '26년 리스크 지계수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후 이를 승인하였음.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이 가용자본 범위 내 관리될 수 있도록 손실허용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였으며, 투자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을 승인하였음.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회사로써 대표회사와 일관된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명문화하였음. - 위원들이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 위원회 개최 전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차례의 사외이사 세션을 통해 위험관리 관련 교육을 제공하였음

9. 보수위원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제1장 보수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집행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집행위원회는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이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배제하고,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집행위원회는 채권발행, 자산유동화 거래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과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등 일부 이사회 내 위원회 사규의 개정 및 중요사규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 구성원칙

집행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집행위원회규정 제2조 제1항).

2명으로 구성한 것은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이 ①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인 일부 사규 제·개정 등, ② 재무에 관한 사항인 자금조달 등 (집행위원회규정 제4조)으로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르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내이사·사외이사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집행위원회 위원은 조창현 사내이사,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 입니다.

■ 위원장

집행위원회는 위원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위원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정관 제30조). 단,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잔여임기 전제로 재선임 가능합니다.

(2) 구성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위원 선임일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일/사임일
조창현	상임	위원	'25.07.30	'28.07
더글라스차이	사외	위원	'24.03.27 ('22.03.31)	'26.03
김덕환	상임	위원	'23.03.29	'25.07(사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총 11회의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5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 : 2025. 01. 10 (오후 3시 10분 ~ 오후 3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해외 채권 발행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해외 채권 발행 승인
2) NPL 매각 승인

(나) 2025년도 제2차 집행위원회 : 2025. 02. 06 (오후 4시 00분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1.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연장 약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해외 채권 발행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4)]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연장 약정 승인
2)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
3) 해외 채권 발행 승인
4)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다) 2025년도 제3차 집행위원회 : 2025. 03. 04 (오후 2시 50분 ~ 오후 2시 55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NPL 매각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CP 신규 약정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조기상환 승인[4]	찬성	찬성	가결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5]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NPL 매각 승인
2)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3) CP 신규 약정 승인
4) 조기상환 승인
5)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

(라) 2025년도 제4차 집행위원회 : 2025. 03. 18 (오후 4시 20분 ~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25. 03. 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 약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해외 채권 발행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 약정 승인
2) 해외 채권 발행 승인

(마) 2025년도 제5차 집행위원회 : 2025. 04. 09 (오전 10시 40분 ~ 오전 10시 50분) [안건 통지일 : 2025. 04.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NPL 매각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NPL 매각 승인

(바) 2025년도 제6차 집행위원회 : 2025. 05. 21 (오전 10시 30분 ~ 오전 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5. 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조기상환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2) 조기상환 승인

(사) 2025년도 제7차 집행위원회 : 2025. 06. 10 (오후 1시 ~ 오후 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0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조기상환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자회사 정관 개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조기상환 승인
2) 자회사 정관 개정 승인

(아) 2025년도 제8차 집행위원회 : 2025. 07. 02 (오후 3시 ~ 오후 3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06.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덕환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연장 약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CP 연장 약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재무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4)]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연장 약정 승인
2) CP 연장 약정 승인
3) NPL 매각 승인
4) 재무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자) 2025년도 제9차 집행위원회 : 2025. 08. 05 (오후 3시 10분 ~ 오후 3시 20분) [안건 통지일 :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자회사 이사회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무보증 외화 공모사채 발행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은행 연장 약정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07.28일임

[비고]
1) 자회사 이사회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
2) 무보증 외화 공모사채 발행 승인
3) 은해 연장 약정 승인

(차) 2025년도 제10차 집행위원회 : 2025. 09. 09 (오후 3시 30분 ~ 오후 3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9. 0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은행 연장 약정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국내 Off-Balance ABS 발행 승인
2) 은행 연장 약정 승인
3) NPL 매각 승인

(카) 2025년도 제11차 집행위원회 : 2025. 11. 03 (오후 4시 30분 ~ 오후 4시 40분) [안건 통지일 : *주석 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ABS 발행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NPL 매각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및 자료제공 기간 단축.
안건제공일은 2025.10.30일임

[비고]
1) ABS 발행 승인
2) 국내 공모 무보증사채 발행 관련 일괄 신고 승인
3) NPL 매각 승인

(타) 2025년도 제12차 집행위원회 : 2025. 12. 19 (오후 4시 ~ 오후 4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창현	더글라스차이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1)]	찬성	찬성	가결
단기 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승인[2)]	찬성	찬성	가결
Off-Balance ABS 조기상환 승인[3)]	찬성	찬성	가결
채권 재매입 승인[4)]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은행 신규/연장 약정 승인
2) 단기 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승인

3) Off-Balance ABS 조기상환 승인
4) 채권 재매입 승인

(3) 평가
회사는 집행위원회가 법령 및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 집행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집행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집행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위원 평가 점수 집행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평가 점수를 1:1로 적용하여 최종등급 산출

-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전문성, 개최빈도, 안건의 적정성·중요성,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등

각 사외이사 위원 및 임원 간의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 위원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집행위원회 평가등급:

회의체	평가	비고
집행위원회	A	- 위원회는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1.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회사는 2025 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개선 권고를 받아, 연중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평가 절차 개선

회사는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평가절차 및 방법을 정기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해 연도의 평가절차 및 방법이 매년 평가 대상기간 중 평가가 진행되기 직전분기의 이사회에서 정해지므로 피평가자가 미리 평가에 대비하기 어렵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매년 초 해당 연도에 실시할 사외이사 평가 절차 및 방법을 피평가자인 사외이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평가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외이사 평가시 평가자들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각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 등 지표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2.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성명	주식수	지분율(%)
1	현대자동차	59,301,937	36.96
2	기아	10,398,877	6.48
3	현대커머셜	55,518,860	34.60
4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CO., LTD.	16,046,528	10.00[1)]
5	FUBON LIFE INSURANCE CO., LTD.	16,046,528	10.00[1)]
6	기타	3,152,556	1.96
합계		160,465,286	100.00

주 1) TAIPEI FUBON COMMERCIAL BANK CO., LTD. 및 FUBON LIFE INSURANCE CO., LTD.가 보유한 실제 지분율은 9.999%임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역할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2 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임원 등의 보상체계 안에 성과와 리스크 구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보수체계가 정착되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근거로 정관에 보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상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6 년 8 월부터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보상위원회의 명칭을 보수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에 제 9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보수위원회규정 제 5 조에 의거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5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보수위원회는 조창현 사내이사 및 변광윤 사외이사, 더글라스차이 사외이사 총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명이 사외이사이고 사외이사인 변광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의 구성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차이 위원은 금융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이며 변광윤 위원은 前 이베이코리아 대표 및 現 뉴웨이브커머스 대표로 기업경영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보수위원회는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보수위원회규정 제5조 제4항).

■ 임기

보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릅니다. 사내이사의 임기는 3년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단,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잔여임기 전제로 재선임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 3월 28일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연태훈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유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환	사내이사	사내이사 (해당)	유	- 현대카드 대표이사
더글라스 차이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	유	- Fubon Financial Holding Assistant VP

■ 2025년 3월 28일 ~ 7월 30일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변광윤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무	- 뉴웨이브커머스 대표
김덕환	사내이사	사내이사 (해당)	유	- 현대카드 대표이사
더글라스 차이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	유	- Fubon Financial Holding Assistant VP

■ 2025년 7월 30일 ~ 12월 31일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금융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변광윤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무	- 뉴웨이브커머스 대표
조창현	사내이사	사내이사 (해당)	유	- 현대카드 대표이사
더글라스 차이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당)	유	- Fubon Financial Holding Assistant VP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사임일
연태훈	사외	(前)위원장	'23.03.29 ('21.03.24)	'25.03(사임)
김덕환	상임	위원	'23.03.29	'25.07(사임)
변광윤	사외	(現)위원장	'25.03.28	'26.03
더글라스 차이	사외	위원	'24.03.27 ('22.03.31)	'26.03
조창현	상임	위원	'25.07.30	'28.07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기관의 자문 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의 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2026년 변동보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변동보상대상자인 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체계와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와 관련하여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2025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도 동일하게 2026년 1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 성과급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26년 성과급 변동 기준과 이연 지급 및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 정책과 체계를 심의, 의결하며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 안건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보수위원회는 2025 년 4 분기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임원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 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총 3인 중 2인이상 사외이사 구성)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으로 2024년 연차보수평가와 관련하여 2025년 1분기에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2025년 연차보수평가사항도 동일하게 2026년 1분기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평가사항은 보상정책의 합리성,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및 환수정책,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법규의 준수여부, 재무상황을 고려한 보수체계 규모 등으로 회사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포함하여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국내의 모든 사업부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내 상근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개인의 단기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대상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결정

회사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변광윤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1 주 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25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총 3회의 보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회의개최내역

(가) 2025년 1분기 보수위원회 : 2025. 03. 04 (오후 3시 30분 ~ 오후 3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02.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연태훈	김덕환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연차보수체계 평가[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및 의결[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와 운영 취지와 맞는지를 심의 승인
2)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승인

(나) 2025년 1분기 임시 보수위원회 : 2025. 03. 28 (오후 2시 30분 ~ 오후 2시 35분) [안건 통지일 : 주석참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김덕환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승인[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정관 및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 절차를 생략함. 안건제공일은 2025.03.24일임

[비고]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

(다)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 : 2025. 12. 19 (오후 2시 30분 ~ 오후 2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25. 12. 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변광윤	조창현	더글라스 차이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특별위로금 지급[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2]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의 결정 및 임원 보수의 연간 한도 설정[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임원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위험성과의 연계성[4]	이의 없음			-
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결과[5]	이의 없음			-

[비고]
1) 퇴임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승인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 선정
3)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과 보수한도 설정
4) 임원 보수체계와 재무상황과 위험성 연계 검토 보고
5) 보수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 및 지배구조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보고

(4) 평가

회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점검하여 동 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 전 보수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 평가주체: 사외이사 및 보수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 평가방법: 보수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문평가 실시 → 각 사외이사 위원 평가 점수 보수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 평가 점수를 2:1로 적용하여 최종등급 산출

- 평가항목: 구성의 적정성·전문성, 개최빈도, 안건의 적정성·중요성, 위원 및 위원회의 역할 등

사외이사 위원 및 임원 간의 평가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며,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사외이사 위원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들은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됩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1분기 정기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보수위원회 **평가 등급**:

회의체	평가	비고
보수위원회	A	- 이사 보수 한도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에 제안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개인 및 회사 성과와 연동된 보상제도를 설계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려 노력함 -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함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회사 전체 또는 중요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는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원칙에 따라 성과측정의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을 모두 포괄하는 MBOD(Management by Objectives by Division)를 반영하여 차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신판 등의 수익이 이윤 창출의 원천이 되는 GPCC본부, PLCC본부의 경우는 수익성 지표가 주요 평가지표가 되고,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를 통해 리스크 발생의 징후를 탐색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카드리스크실은 건전성 지표가 주요 평가지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MBOD 평가방식은 성과측정의 기본성격인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복합적 관리 방식을 기반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및 방향성도 함께 고려한 성과측정 방식입니다.

■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대표이사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의 손익 목표 달성율 및 MBOD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MBOD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인의 성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과 보상은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원칙에 따라 성과 측정의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을 모두 포괄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개인의 업무에 따라 연간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정성/정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담당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연성과급의 경우 성과급 지급시점의 회사평가에 따라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의 경우 조직의 평가를 반영하여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보수는 성과보수의 40%를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제외)

■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이연된 성과보수액 지급시에도 지급시점 당해년도의 회사평가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보수위원회 및 상벌세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 시 결정된 이연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회사평가를 반영하여 조정 지급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연봉은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담당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의 경우 조직의 평가를 반영하여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0~70% 범위 내로 성과 보수를 설정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와 일반직원의 경우 S~D 등급까지의 평가 결과에 맞춰 성과 지급율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으로의 보상이 어려워 성과보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지배구조법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임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40%에 대하여 3년간 이연지급 합니다. (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제외)

(4)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회사는 성과주의 문화의 정착을 위해 고정급 성격의 기본연봉 외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상체계는 손익규모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증감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금체계의 합리화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합리적 차등을 두는 '직무그룹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보수위원회 규정 12조 7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4분기 보수위원회에서 2026년 보수체계 설계를 의논하고 보수한도를 설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보수체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 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1]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 (B)	비율(A/B)	임직원 수 [3] (C)	임직원 평균보수 (A/C)
전년도 (2024년)	2,304	3,508	65.7%	2,103	1.10
당해년도 (2025년)	2,519	4,012	62.8%	2,200	1.15

[비고]
1) 임직원 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외이사 보수총액은 대상에서 제외
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은 t-1 기의 금액을 기재(예시: 당해년도가 '25 년인 경우, '24 년 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기재)
3) 매월 말 재직 임직원(1~12월 월 누적합산)수를 12개월로 나눈 1년 평균 임직원수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대표이사	사장~전무	상무	Senior[2] Manager	Senior Manager	Manager	Associate
전년도 (2024)	보수총액[1]	30.5	50.8	122.4	82.0	720.7	461.0	836.4
	성과보수액	10.1	14.9	37.4	23.0	185.7	119.1	164.6
당해년도 (2025)	보수총액[1]	29.0	66.8	102.9	79.4	813.3	518.4	908.6
	성과보수액	7.9	19.0	30.7	20.8	207.2	131.7	182.0

[비고]
1) 임직원 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업무집행책임자

(3)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임직원 평균보수
			Senior Manager			Manager			Associate			
			근속연수 5년 미만	근속연수 5~9년	근속연수 10년이상	근속연수 5년 미만	근속연수 5~9년	근속연수 10년이상	근속연수 5년 미만	근속연수 5~9년	근속연수 10년이상	
전년도 (2024)	남성	3.33	1.04	1.83	1.82	0.97	1.26	1.33	0.43	0.87	0.94	1.16
	여성	2.77	0.89	1.55	1.68	0.77	1.18	1.19	0.34	0.70	0.78	0.64
	전체	3.21	1.00	1.74	1.79	0.89	1.22	1.27	0.38	0.76	0.81	1.10
당해년도 (2025)	남성	3.25	1.35	1.95	1.95	0.91	1.30	1.40	0.50	0.90	0.98	1.25
	여성	3.02	1.09	1.95	1.79	0.95	1.26	1.30	0.39	0.76	0.82	0.71
	전체	3.20	1.29	1.95	1.92	0.93	1.28	1.35	0.43	0.81	0.84	1.15

* 개별 항목은 직급, 근속연수 및 성별에 따른 1 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을 기재한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 수[1]	기본급	성과보수액[2]	
					이연지급 대상[3]
전년도 (2024)	임원[4]	62	163.9	82.7	26.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당해년도 (2025)	임원[4]	60	168.8	78.4	31.4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비고]
1) 해당년도 중 6 개월이상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2) 전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당해년도 초에 지급하고 있음. 해당 금액은 전체 성과보수액 중 당해년도에 지급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이연 지급 예정인 확정 금액
3) 전년도 성과급 중 지급은 확정되었으나 이연 지급하기로 한 금액
4)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2) 성과 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4)	임원[1]	82.7	82.7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당해년도 (2025)	임원[1]	78.4	78.4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비고]
1)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중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이 있는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1]		
		지급확정[2]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4)	임원	44.7	44.7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당해년도 (2025)	임원	52.7	52.7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비고]
1) 해당년도 말 현재 지급되지 않고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특정년도 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미확정된 경우 지급 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되는 이연보수액부터 적용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4)	임원	44.7	44.7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당해년도 (2025)	임원	52.7	52.7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연도 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1)]				
			t기	t-1기	t-2기	t-3기
전년도 (2024)	임원	44.7	26.8	12.5	5.4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당해년도 (2025)	임원	52.7	31.4	16.8	4.5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비고]
1) 해당년도 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5년 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을 2025년(t기) 발생분, 2024년(t-1기) 발생분, 2023년(t-2기) 발생분 등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전년도 및 당해년도 해당사항 없음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 수	퇴직보수액[1)]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4)	임원	9	15.0	2.8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당해년도 (2025)	임원	4	12.4	7.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비고]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제3절 관련 규정

1. 정 관

1995. 01. 09. 제정
1996. 03. 27. 개정
1997. 03. 27. 개정
1998. 03. 17. 개정
2000. 03. 28. 개정
2001. 10. 09. 개정
2001. 12. 03. 개정
2002. 03. 18. 개정
2003. 03. 28. 개정
2003. 07. 01. 개정
2003. 08. 22. 개정
2005. 10. 31. 개정
2006. 03. 23. 개정
2008. 03. 14. 개정
2008. 10. 30. 개정
2010. 11. 23. 개정
2011. 03. 18. 개정
2012. 03. 05. 개정
2013. 03. 20. 개정
2013. 05. 21. 개정
2014. 03. 20. 개정
2015. 03. 26. 전면개정
2016. 03. 23. 개정
2016. 07. 28. 전면개정
2017. 03. 23. 전면개정
2018. 03. 29. 개정
2019. 03. 28. 개정
2020. 03. 27. 전면개정
2020. 09. 25. 개정
2022. 03. 31. 개정
2022. 07. 27. 개정
2024. 03. 27. 개정
2025. 03.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Hyundai Card Co., Ltd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4.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5. 제 1 호 내지 제 4 호 업무의 대행 및 위임
6.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7.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8. 시설대여업무
9.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10. 할부금융업무
1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1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1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1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1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의 관리·운용
16.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
17.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18. 연불판매업무
19.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20.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1. 어음할인 업무
2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
23. 제 1 호 내지 제 22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4. 카드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25. 지급보증 업무
26. 제 1 호 내지 제 25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업무
27.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28. 보험대리점 업무
29. 일반여행 업무
30.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대행 및 소유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31. 통신판매 업무
32. 회원 등을 위한 동호회 조직 및 운영업무
33. 환전상 업무
34. 채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
35. 부가가치통신 업무
36. 업무관련 출판물의 발행
37. 외국환업무
38. 유가증권의 취득 및 이용
39.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무
40.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 및 판매
41.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및 경영관리
42. 인터넷사업과 관련된 부수업무
43. 도·소매업
44. 부동산 임대업
45. 본인신용정보관리업
46. 금융상품자문업
47.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4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7 호의 각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그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2【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 9 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의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가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대상 우선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제9조3【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 9 조에 의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로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5. 전환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그 전환주식을 제 9 조의 2 에서 정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한도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매수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 후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명의개서 등】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위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같은 해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③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은 3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 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 3 항 및 제 4 항의 명의개서 정지와 기준일은 함께 정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 정지기간 및 기준일은 그 기간 또는 날의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6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6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 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로부터 1 개월 전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1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1조【소집시기, 소집권자 및 통지】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는 전항에 기재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본 정관에서 통칭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85%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사 또는 주주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하거나, 작성하여 제공한다. 이 경우 한국어 의사록과 타 언어 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한국어 의사록이 우선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29조【이사, 대표이사 및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① 이사회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사외이사를 3 인 이상으로 한다. 이사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1 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④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본항에 한하여 사외이사 제외)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연임가능하며, 연임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에 만료된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제2항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 이사의 사임 또는 퇴임으로 인하여 제29조에서 정한 이사회 최소 정원(4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사 총수가 4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 총수가 4인 이상이면서 사외이사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해당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31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대표이사 및 선임사외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정한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동 규범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며, 선임사외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사외이사를 대표한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33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사는 요청 시 이사회 의장에게 회의일, 회의장소, 회의시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회 소집일 1 주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의 수단으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이하 '이사회 규정')을 둔다.

제3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가부동수시 결정권(Casting Vote)을 갖지 않는다.
③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 등의 사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및 제 50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9 조의 2, 제 50 조의 승인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1. 주주총회 관련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
다.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라. 회사의 법적 형태의 변경
마. 주식의 감소 및 소각
2. 이사회 관련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해임
나. 공동대표이사의 결정
다. 이사 경업 및 겸직 승인
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폐지, 동 위원회 위원의 선·해임, 동 위원회 규정의 제정
마.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집행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경영 관련 사항
가. 연간 예산, 운영계획,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경영목표 포함) 및 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나. 200 억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 회사자산(영업 및 영업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자산·영업양수 또는 사업체 양수
다. 100 억원 이상의 자금 대여 또는 보증(2017 년 3 월 29 일 전에 취급되고 있던 통상적인 상품 또는 영업활동 제외)

라. 100억원 이상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회사 자산에 대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등 담보물권설정에 관한 사항
마. 보증금(환산보증금 포함) 100억원 이상의 회사 자산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물권설정에 관한 사항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신주발행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중간배당
라.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마. 회사의 회생·파산 및 청산절차의 개시 및 파산관재인·보관인·청산인 등의 선임에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바. 100억원 이상의 대물변제
사. 변제능력 상실 확인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나. 자금세탁방지규정,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이해상충
가.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8. 기타
가. 제12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결정
나. 배상액, 소송비용 또는 벌금 등 회사가 100억원 이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절차 또는 행정절차(소제기, 응소, 상소, 반소, 고소, 고발 등 형사절차 진행, 보전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기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절차 포함)의 제기 및 이와 관련된 대응 등의 절차 진행
다. 지분투자 또는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상법,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

④ 아래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며, 이 경우 소수주주(첨부 용어의 정의 참조, 이하 같음)가 지명하여 선임된 이사 1인 이상이 반드시 찬성하여야 한다. 단, 해당 소수주주가 지명하여 선임된 이사 전원이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와 관련된 다른 회사의 인수, 합작투자회사·동업회사·계열회사(첨부 정의 참조, 이하 같음)의 설립, 전략적 제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200억원 이상의 투자
나. 회사의 JV 등에 대한 투자금액 총합계가 자본총계(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최근 재무제표 기준) 5% 이상이 되는 경우
다. 회사가 전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국가에 투자
라. 금융 관련 자회사에 대한 투자

2. 신사업 진출, 회사의 기존 사업 목적 또는 영역의 중대한 변경, 회사가 영위하고 중요한 사업부문의 중단

3. 납입자본금의 증가, 전환사채 등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증권의 발행, 주식소각, 자사주매입, 기타 주식 발행 관련 사항

4. 회사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의 부담 또는 보증

5. 회사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첨부 정의 참조, 이하 같음)의 투자

6. 회사의 연간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단, 변경의 경우, 해당 변경 또는 일련의 변경이 최초로 승인된 연간예산 또는 사업계획상 연간 영업이익의 10% 이상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그럴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7. 단일한 협의, 계약 또는 거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당사자,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협의, 계약 또는 거래로서 그 총금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본 호를 제외한 본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는 사항은 제외하며, 대체투자(첨부 용어의 정의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경우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의 투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소수주주가 지명하여 선임한 위원의 찬성 필요), 400억원 초과 투자에 한하여 이사회가 승인함

8.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단일한 또는 일련의 협의, 계약 또는 거래로서, (i) 단일한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당사자,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협의, 계약, 거래의 총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ii) 회사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또는 변경, 위원의 선·해임, 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그 변경
10.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단,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행하는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은 제외함)으로서, (i) 회사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ii) 200억원 이상이거나, (iii) 회사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1. 중요한 소송, 중재 기타 법률절차(세금 또는 규제 차원의 조사 등을 포함)의 개시 또는 합의(절차의 포기 또는 상소 등 포함)로서, 관련 금액의 총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12. 상법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이 요구되는 여하한 안건 및 조치
13. 1,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집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승인하는 사채발행 및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제외)
14. 제1호 내지 제13호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제38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및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② 이사회는 결의사항의 주요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 세부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의사록】

① 각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주주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하거나, 작성하여 제공한다. 이 경우, 한국어 의사록과 타 언어 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한국어 의사록이 우선한다.

제4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집행위원회, 사외이사회 및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제37조 제3항 제7호의 사항
5. 제37조 제4항의 사항
6. 기타 법령 및 본 정관, 사규에서 위임을 금지하는 사항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소수주주가 지명하여 선임된 이사 1인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의장의 선임은 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사외이사회의 의장은 제44조에 따라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소집일 1주 전에 각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일 3영업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기타 위원회 소집 및 개최에 관하여는 관련 사규 및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사외이사회의 경우에는 제 43 조에 따른다.
⑦ 이사회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⑧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위원이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⑨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7조 제1항 본문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방법】

이사회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해당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단 제4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43조【사외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사외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회를 설치한다.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사외이사회는 선임사외이사가 주관한다. 사외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 회의장소, 회의시간을 정하고, 그 1 주 전에 각 사외이사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의 수단으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본 항의 사외이사회 소집 통지와 통지 생략에 대한 동의는 제 35 조 제 4 항의 통지 또는 동의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가 직접 사외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외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사외이사회는 재적사외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44조【사외이사회 의장】

① 사외이사회의 의장은 선임사외이사로 한다.
② 선임사외이사가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가 지명한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사외이사가 직무대행 사외이사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외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사외이사회의 검토 및 논의사항】

사외이사회는 사외이사 이외의 임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며, 회사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 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단, 주주총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승인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⑩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⑫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특별위원회】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재무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9조【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① 이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별개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5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 및 업무상 필요한 경비,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배구조법, 상법 및 관련 법령, 본 정관 및 별도로 정하여지는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제 6 장 최고경영자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

제51조【최고경영자 및 업무집행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직위를 수행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되며, 회사를 대표하고,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 본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무·역할을 수행한다.
③ 회사는 본 정관 및 사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그리고 업무담당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둘 수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업무집행책임자 또는 경영진(본 정관 및 모든 회사 사규에서 지배구조법상 업무집행책임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라 한다.
④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하는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및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 업무
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⑥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진다.
⑦ 업무집행책임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업무집행책임자는 연임 및 재임이 가능하다.
⑧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업무집행책임자 또는 경영진의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처우,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본 정관 및 별도로 정하여지는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단, 본 항에서 업무집행책임자 또는 경영진은 직원인 자를 제외한다)

제5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사규 또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54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의 작성비치】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의 6주간 전에 영업보고서와 다음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위원회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법령에서 요구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

②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3 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 기재 서류들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제 1 항 기재 각 서류가 법령 및 본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이사회가 제 5 항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고, 제 1 항 기재 각 서류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제57조【이익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단, 제 55 조 제 5 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만 정한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시,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 배당하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58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범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소각의 방법 등 이익소각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한다.

제59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제60조【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①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2 조의 2 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이 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이 지배구조법 제 30 조의 2 및 제 30 조의 4 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 타

제61조【기타】

사규에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본 정관의 정의는 사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 정관과 사규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

제1조 (조례 및 규칙)

이사회는 본 정관의 취지에서 본 회사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기구와 업무처리규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관련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유예)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0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정관 제13조의2를 제외)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제13조의2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채)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2003년 7월 31일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2005년 10월 30일 현재 유효한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2005년 8월 8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 신주의 발행은 본 정관의 제2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주가 그러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본 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인수되지 않은 주식의 처분은 본 개정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소집되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하는 이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이사에게는 개정전의 30조가 적용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4조 【공고방법】의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4조 단서의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2 제1항 후문, 제43조 제5항 및 제6항, 제45조 제2항 전문 및 제3항은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규정)

1. 이 규정 제52조 제4항 1행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된다. 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2. 이 규정 제53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된다. 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장은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0조, 제11조 제7항,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내외회사를 의미한다.

2. '소수주주'는 1 인 또는 복수의 주주들이 합하여 기준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1 인 또는 복수의 주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주식수'는 본 정관 개정일 현재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8%에 해당하는 수를 의미한다. 단 회사의 최대주주가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는 소수주주에서 제외한다.

3.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증권(지분증권 제외)을 의미한다.

4.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5. '신규진출국가'는 회사가 기존에 투자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며, 기업 및 펀드 운용사(GP)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존 투자여부를 판단한다.

6. '대체투자'는 아래 기재된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다른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별표1 : 대체투자>

① (부동산) 부동산 개발 및 운영(임대 등)에 대한 직접 대출,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단, 국내 부동산 PF, 국내 주거용 MBS, 국내 부동산 PF ABS(ABCP) 직접투자 제외

② (SOC) SOC 개발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직접 대출, 집합투자기구,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③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운영 사업에 대한 직접 대출, 집합투자기구,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④ (기업투자) PEF, 헷지펀드, 벤처·비상장·투기등급, 기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및 인수금융(직접대출, 유가증권)

⑤ (유동화) 대출채권, 발행사채, 부실채권, 예금, 매출채권, 기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 및 이를 주로 편입한 집합투자기구. 단, 국내 주담대, 정기예금, 부동산PF, 신용카드채권, 오토론, 항공운임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제외, 해외 MBS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으로 분류

⑥ (상품·파생)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상품 및 관련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이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⑦ (기타) 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실물자산, 여러 자산에 대한 복합 투자, NPL 관련 투자 및 대출 등

※ (참고)

1) 집합투자기구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2)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상장주식 및 우량 회사채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분산 투자) 및 이에 대한 레버리지·인버스 전략 외에는 모두 대체투자로 간주

2.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 06. 09. 제정
2017. 02. 27. 개정 (2017. 03. 23. 시행)
2018. 01 .30. 개정
2018. 09. 11. 개정
2019. 01. 29.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02. 24. 개정
2021. 03. 24. 개정
2022. 01. 28. 개정
2023. 02. 07. 개정
2024. 08.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를 의미한다.
3.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의미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의 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사내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④ 기타비상무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⑤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매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 또는 금융에 대한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가부동수시의 결정권(Casting Vote)을 갖지 않는다.
④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사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3장 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8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상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기타 관련 사규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과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회사 경영을 지원한다.
② 상법·여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기타 관련 사규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것과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9조(이사회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결의사항의 주요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 세부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의 권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위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의 역할 및 책임)

①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이익보호 및 회사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로부터 독립하여 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단,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는 다른 이사들 보수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책임한도가 제한된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의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를 보상한다.

제12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
2. 사외이사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요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3.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회의 1주 전까지 송부. 단, 이사 전원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당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음(정관 제35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 생략 동의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전문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제5장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4조(이사 선임 절차)

① 이사 및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대주주(지배구조법상의 정의에 따름) 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해당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4.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
⑤ 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이사의 퇴임)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의 발생
4. 해임
② 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해당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4.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에 한하여 의결권 제한)
③ 회사는 이사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외이사의 퇴임 또는 사망으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외이사가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개최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일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3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제6장 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7조(이사회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이사는 요청시 이사회 의장에게 회의일·회의장소·회의시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재적이사 과반수 미만의 참석으로 이사회가 개회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다시 소집된다. 재소집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횟수)

이사회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권 행사방법 및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방법 및 제한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연 1회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 안건의 적정성, 이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② 제1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사외이사의 평가)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해 결의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결의할 수 있다.

제8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집행위원회 를 설치한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가 의장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위 이사회 내 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선임은 각 위원회 결의로 한다.
④ 이사회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정 권한을 특정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다. 회사는, 이사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한 위원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 내 위원회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 (사외이사회)

① 사외이사회는 선임사외이사가 소집한다.
② 사외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관리 및 후보검증 결과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제안 받은 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가 제안한 자에 대한 면접(서면 면접 포함)을 진행할 수 있다.

⑥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후보추천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중에서만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 중 1명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 법률,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 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④ 감사위원회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 개선하기 위하여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 등 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26조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정관,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3.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관련 사규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항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7조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는 정관,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관련 사규에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항 및 위험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8조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법률/정관 및 사규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 받고 집행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방법)
이사회는 정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해당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단 정관 제4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9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연1회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결의 및 보고안건의 적정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절차 및 방법 등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1조(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 요건)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에 규정된 요건을,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진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와의 관계를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배구조법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⑥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29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3조(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① 회사는 현재 직급 및 직무, 경험, 지식, 실무경험,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집행책임자 후보군을 선정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집행후보군 중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업무집행책임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34조(업무집행책임자의 퇴임)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의 발생
4. 해임

②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책임자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성과가 타 업무집행책임자 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업무집행책임자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업무대행자 또는 후임자를 임명한다(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후임자 임명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장 업무집행책임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 제도

제35조(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후보자에 대한 교육결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집행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4장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7조(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평가)

①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성과평가는 대표이사가 보수위원회규정이 정한 등급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 업무집행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재선임 또는 해임시 등에 활용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38조(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

①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성과급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급은 3년 이상 이연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연지급 비율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제15장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제39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경영승계 절차 등)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최고경영자는 퇴임하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다. 단 임기만료 후 연임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경영승계절차는 개시되지 아니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여전법 및 관련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의 발생
4. 해임
5. 제40조에 따른 비상상황의 발생

②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법령 또는 정관 및 관련 사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경영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절차의 개시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임한다. 단, 이미 이사로 선임된 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 1호의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해당 절차는 제3항의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2.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

제40조(비상상황)

①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에 따라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이사의 동의는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직무대행자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업무담당이사 순으로 하며,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직급을 더 오래 수행한 자가 직무대행자가 된다.

③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장 최고경영자 승계 지원부서 등

제41조(지원부서)최고경영자 승계 지원부서는 인사지원부서에서 담당하며, 동 팀은 최고경영자 승계 지원 관련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 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업무 지원

제17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2조(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다.

제43조(적극적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연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의 지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일 것
2.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일 것
3. 1호, 2호 외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제18장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제44조(후보자 선정 및 관리)

① 최고경영자 후보군(이하 후보군)은 연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정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검토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한다.

② 지원부서는 자격심사 및 평판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후보군을 관리한다.

③ 지원부서는 연 1회 이상 제2항의 후보군 관리현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④ 제1항의 후보군은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9장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5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사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주주총회 20 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다음 사항의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을 함께 통지한다. 단, 기존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한 제 39 조 제 4 항에 따른 이사회 20 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시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시 다음 사항의 공시 사실 및 공시 내용을 통지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20장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6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등)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르며,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47조(최고경영자의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통제의 기능
2. 주요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수익과 성장의 최대화
3. 법, 규정 및 사회적 의무의 성실 이행
4.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직무의 성실 이행
5.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노력

②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8조(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등)

최고경영자의 평가는 회사의 성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성과급은 보수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①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이 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이 지배구조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장 제정 및 개폐

제50조(제정 및 개폐)

본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 단순한 용어 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공시)

회사는 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 변경한 경우 여신금융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4조 제2항은 동 내부규범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한다. 동 내부규범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중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이후인 경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사회규정

2000. 01. 01 제정
2002. 01. 01 개정
2002. 04. 16 개정
2003. 03. 28 개정
2005. 10. 31 개정
2008. 02. 22 개정
2010. 02. 09 개정
2010. 10. 14 개정
2011. 02. 24 개정
2012. 01. 3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3. 04. 05 개정
2014. 02. 27 전면개정
2015. 02. 25 개정
2016. 06. 09 개정
2017. 02. 27 전면개정(2017. 03. 23 시행)
2018. 01. 30 개정
2019. 01. 29 개정
2020. 02. 11 개정
2020. 06. 16 개정
2021. 01. 29 개정
2021.09.07 자구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현대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사회 보고사항 및 결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승인사항
나. 감사결과 평가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바. Compliance 이슈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동향
사. 계열회사 간 연체채권 거래 현황
아.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차.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수행실적
카.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하. 기타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 및 회사의 중요한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 외에 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와의 포인트 관련 마케팅(첨부 정의 참조)비용의 분담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단,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가맹점 수수료율의 변경. 단, 회사에 유리하게 인상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④ ①항 카호의 내용 중 현대차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현황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업무집행책임자,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최고경영자 및 업무집행책임자)

최고경영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되고, 법령,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따른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는, 겸직 또는 경업을 하는 경우,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할 경우,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제3장 사외이사회

제11조 (사외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사외이사

제12조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및 업무)
① 회사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② 선임사외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업무를 행한다.

제13조 (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회를 포함한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외이사의 자료요청권)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외이사의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이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지원부서를 둔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제18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교육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 (언어)
이 규정의 영문본과 한국어 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한국어 본이 우선한다. 단, 제5조의 경우에는 영문 본이 한국어 본에 우선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제12조 제4항 1행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부터 적용된다. 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A: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와의 포인트 관련 마케팅"이라 함은 다음의 각 계약(다음 계약의 개정 또는 갱신에 따른 최종 계약을 의미)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와 영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가. 2003년 5월 23일 현대자동차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 및 관련 부속협의서
   나. 2003년 5월 23일 기아자동차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 및 관련 부속협의서
   다. 2003년 12월30일 현대자동차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 및 관련 부속협의서
   라. 2003년 12월 30일 기아자동차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 및 관련 부속협의서

2. 제1호 외 본 이사회규정상의 용어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03.03.17 제정
2005.10.31 개정
2013.02.28 개정
2014.02.27 개정
2015.02.26 전면개정
2016.02.25 개정
2016.06.09 개정
2017.04.19 개정
2018.04.02 개정
2018.09.11 개정
2019.01.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4조의2(위원의 결원)

① 제4조 제2항의 위원회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새로운 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에서 한다.
1. 기존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결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2.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선임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소집일 1주 전에 각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문자 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분기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분기 중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그 분기 말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이 때 통지를 받은 이사가, 결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요약하여 그 다음 분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업무

제11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2. 대표이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외 임원으로부터 제안 받은 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가 제안한 자에 대한 면접(서면 면접 포함)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후보추천이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군 중에서만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위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회사는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 감사위원회규정

2003. 03. 17. 제정
2008. 09. 22. 개정
2015. 02. 26. 개정
2015. 09. 04. 개정
2016. 07. 28. 개정
2018. 01. 30. 개정
2018. 09. 11.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01. 29. 개정
2024. 08.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역할)

①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정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련법규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② 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자료제출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8조 (선임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9조 (감사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10조 (감사위원의 결원)

①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으로 위원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1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권한위임)

① 감사위원의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실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일상감사사항 등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실장이 공람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4조 (소집절차)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개최일 1주 전에 각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 사항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나. 감사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건의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4. 기타
   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련법규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라.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마.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가. 관련법규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7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9조 (감사실장에 대한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실장에게 위임하며, 감사실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 감사실장은 제19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등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경영진에 독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외부감사인 선정

제20조 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①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

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 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허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 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제20조 3 (외부감사인의 선정 사항의 준수여부 확인)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보조조직)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으로서 감사실을 둔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 및 부의안건과 관련된 사무처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실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2015. 02. 26. 제정
2016. 03. 02. 개정
2016. 06. 30. 개정
2016. 07. 27.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09. 20. 개정
2018. 02. 19. 개정
2018. 07. 18. 개정
2018. 09. 11. 개정
2019. 12. 18. 개정
2021. 09. 09. 개정
2022 .03.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현대카드주식회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위험'이란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을 의미한다.
② '주관부서'란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③ '금융그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④ '소속 금융회사' 란 관계법령 상 감독대상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특별결의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이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5조 (위원의 결원)
①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1. 기존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결원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2.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선임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

② 제4조 제2항의 위원회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의결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리스크관리실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 1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위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배석하여 필요 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1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다만, 결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기에 위원회 결의사항이 없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제17조에 따른 보고사항을 해당 분기에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고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결 의

제13조 (결의사항)

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적정투자한도와 손실허용한도 승인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결의사항의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음 분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제16조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위험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거나 정하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 위하여 위험관리운영위원회(RCC)를 둔다.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 고

제17조 (보고사항)

① 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승인사항
2. 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2. 기타 금융복합집단의 위험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기타

제18조 (정보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정)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 결의로 개정한다.

제20조 (언어)

본 규정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 칙 (2015. 02. 26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0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6.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6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7. 2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9.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1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7. 1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0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0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3. 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7. 보수위원회규정

2015. 09. 04 제정
2016. 06. 09 전면개정
(규정명칭 변경)
2017. 09. 20 개정
2017. 11. 13 개정
2018. 02. 19 개정
2019. 05. 21 개정
2022. 03. 25 개정
2023. 11. 22 개정
2024. 07.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보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필요 및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변동보상'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② '성과급'은 조직평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의미한다.

④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⑤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는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⑥ '변동보상 대상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원', 본 조 제4호 정의에 따른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 조 제5호에 따른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을 의미한다.

제2장 보수위원회

제3조 (설치근거)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설치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점검
4. 보상체계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임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5.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6. 「 임원에 대한 인사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내 제 3장 보수 및 퇴직금 부문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자회사 및 해외법인의 임원보수 지급 기준 및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단,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이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수가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1회 이상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1주 전에 각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 방법 및 결의사항의 통지)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이사가, 결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요약하여 다음 분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책임)
위원은 보상위원회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 또는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서류보존 등)
위원회의 설치, 운영내역, 리스크관리, 내부통제부서의 관리 및 감시활동내역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3장 보상설계

제12조 (보상설계의 원칙)
① 회사의 보상체계는 위험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감수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③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총 변동보상액 지급으로 회사에게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변동보상 대상자가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보장형 상여금은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 고용 시, 1년 이내에만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장기 가치창출 및 건전한 위험부담 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부서에 대한 보상)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부서가 회사의 보상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업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대상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부서는 매년 조직 및 개인별로 해당 년도에 핵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보상이 이루어진다.

제4장 임원의 보상 체계

제14조 (임원 보수 산정기준)
임원의 보수의 산정기준은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변동보상의 원칙 등)
①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소속부서•회사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변동보상 대상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③ 회사, 부서,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 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변동보상대상자에 변동보상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연지급 등)

① 변동보상 대상자의 변동보상인 성과급은 3년간 이연 지급하며, 기간별 이연지급 비율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업무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직의 평가 수준에 따라 S~D등급까지 결정되며, 고등급자 일수록 변동보상의 비율은 증가한다.

제17조 (지급방법 등)

① 임원의 변동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환수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안정과 구제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외이사의 보수)

① 사외이사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며,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한 변동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5장 직원의 보상 체계

제19조 (직원의 보상)

① 직원의 보상은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원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여 설계한다.

② 직무 가치와 능력을 직원 임금체계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 항목을 단순화 하여 임금지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③ 직원의 보상은 급여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20조 (성과평가지표)

① 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과지표는 매년 기업환경 및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경기예측, 회사의 특성, 연도별 기업환경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매년 조직 및 개인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며,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를 받는다.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보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집행위원회규정

2010. 10. 14 제정
2011. 08. 30 개정
2012. 01. 31 개정
2012. 10. 10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20 개정
2015. 03. 26 전면개정
2016. 02. 25 개정
2016. 06. 09 개정
2017. 02. 27 전면개정(2017. 03. 27 시행)
2018. 01. 30 개정(2018.03.29 시행)
2021. 05. 20 개정 (자구수정)
2022. 03. 31 개정
2023. 02. 07 개정
2023. 10. 10 개정 (자구수정)
2023. 12. 20 개정 (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현대카드주식회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 특별결의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사임, 해임 등으로 위원이 1인이 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정관,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 (결의사항)
집행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경영관련 사항
   가. 100억원 이상의 합작사업·조합관계·전략적제휴 등의 계약체결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JV 운영방안, 조직구조, 투자금액, 지분율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
   나. 이미 이사회에서 승인된 합작사업·조합관계·전략적제휴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의 일부 주요 계약조건(계약기간 연장, 지분율 변동 없는 자본금 증액 등) 변경 승인
   다. 100억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 회사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중요한 영업의 양도, 다른 회사의 자산·영업양수 또는 사업체 양수
   라 50억원 이상의 자금 대여 또는 보증(과거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 제외)
   마. 50억원 이상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회사 자산에 대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등 담보물권설정에 관한 사항

바. 보증금(환산보증금 포함) 50억원 이상의 회사 자산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물권설정에 관한 사항
사. 50억원 이상의 대물변제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사채발행
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다. 사채발행 및 자산유동화를 제외한 5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및 그와 관련된 파생계약
라. 조기상환결정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집행위원회 규정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개정
나. 정관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 관련 사규의 제·개정
다. 선물 및 접대의 제공과 수령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라. NPL 채권의 매입·매각 승인

4. 기타
가. 자회사(첨부 A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이하 "자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의 제정또는 개정 승인(단, 임원성명, 주소지 등 경미한 기재사항의 변경 및 오기정정은 제외)
나. 배상금, 소송비용 또는 벌금 등 회사가 50억원 이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절차 또는 행정절차(소제기, 응소, 보전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기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절차 포함)의 제기
다. 기타 정관 및 사규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위원회로 위임된 사항

제5조 (위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위원 중 1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결의방법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이 2인일 경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이 2인 초과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기타 사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다.

제9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2016. 06. 09. 개정 집행위원회규정 제5조 1) ②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A: 정 의

1. "NPL 채권"이란 채권재조정, 법정관리·화의 등 이자 수입이 없는 채권 또는 연체/대환 및 프리워크아웃 등 개인구제 PGM 채권을 의미한다.

2. 기타 나머지 본 정관상의 용어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

Hyundai Card